

제716호



2025. 12. 15.(월)

**시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군 산 시 장

발행처 : 공보협력과 (☎454-2083)

**【조 례】**

|               |  |    |
|---------------|--|----|
| 군산시 조례 제2400호 |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1  |
| 군산시 조례 제2401호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 군산시 조례 제2402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 군산시 조례 제2403호 |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                       | 19 |
| 군산시 조례 제2404호 |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 군산시 조례 제2405호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 군산시 조례 제2406호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 군산시 조례 제2407호 |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 37 |
| 군산시 조례 제2408호 |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40 |
| 군산시 조례 제2409호 |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br>조례 | 43 |
| 군산시 조례 제2410호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45 |
| 군산시 조례 제2411호 |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0 |
| 군산시 조례 제2412호 |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62 |
| 군산시 조례 제2413호 |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64 |
| 군산시 조례 제2414호 |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
| 군산시 조례 제2415호 |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                   | 83 |
| 군산시 조례 제2416호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85 |

**【규 칙】**

|              |                                   |    |
|--------------|-----------------------------------|----|
| 군산시 규칙 제881호 |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7 |
| 군산시 규칙 제882호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0 |
| 군산시 규칙 제883호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93 |

**【훈 령】**

|              |                            |     |
|--------------|----------------------------|-----|
| 군산시 훈령 제465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 102 |
| 군산시 훈령 제466호 |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 105 |

**【입 법 예 고】**

|                    |                                      |     |
|--------------------|--------------------------------------|-----|
| 군산시 공고 제2025-2700호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0 |
| 군산시 공고 제2025-2710호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57 |

|                               |  |     |
|-------------------------------|--|-----|
|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br>공고 제2025-37호 |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2 |
|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br>공고 제2025-38호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9 |
| <b>【 고 시 】</b>                |  |     |
| 군산시 고시 제2025-223호             | 하천점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                     | 194 |
| 군산시 고시 제2025-224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95 |
| 군산시 고시 제2025-226호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사송달 공고             | 197 |
| <b>【 공 고 】</b>                |  |     |
| 군산시 공고 제2025-2570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198 |
| 군산시 공고 제2025-2618호            | 공인 산조 및 폐기 공고                          | 211 |
| 군산시 공고 제2025-2675호            | 공인 산조 공고                               | 213 |
| 군산시 공고 제2025-2720호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보상계획공고                  | 215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00호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특성과 군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사회 치안 안정과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 장례 비용 지원 사업.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나.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치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군산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군산해양경찰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교통안전 시설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5.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6. 그 밖에 범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과 군산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단체의 대표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 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 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기관 등 협조)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과 제14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의 협의결과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01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내흥동 29, 30, 31, 32란 관할지번 및 반을 신설하고 다음에 구암동 34, 35, 36란 지번주소를 구암동 317-4에서 구암동 647로 변경하고 내흥동 37, 38란을 신설하고, 구암동 39, 40, 41, 42, 43란을 신설하고, 동계란 다음과 같이 하며, 지곡동 80란을 신설하고 동계란 다음과 같이 하며, 미룡동 61란을 신설하고 동계란 및 동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동 명 | 통     | 반      | 관 할 지 번                              |                                       |
|-----|-------|--------|--------------------------------------|---------------------------------------|
| 구암동 | 1~7   |        | 현행과 같음                               |                                       |
| 내흥동 | 8~9   |        | 현행과 같음                               |                                       |
| 구암동 | 10~16 |        | 현행과 같음                               |                                       |
| 내흥동 | 17~28 |        | 현행과 같음                               |                                       |
| 내흥동 | 29    | 1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1동 201호~2402호     |                                       |
|     |       | 2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1동 103호~2104호     |                                       |
|     |       | 3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2동 201호~2402호     |                                       |
|     |       | 4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2동 203호~2204호     |                                       |
|     |       | 5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3동 101호~2402호     |                                       |
|     | 30    | 1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3동 203호~2104호     |                                       |
|     |       | 2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4동                |                                       |
|     |       | 3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5동 201호~2502호     |                                       |
|     |       | 4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5동 203호~2504호     |                                       |
|     | 31    | 1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1동 101호~2502호    |                                       |
|     |       | 2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1동 103호~2504호    |                                       |
|     |       | 3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1동 105호~2506호    |                                       |
|     |       | 4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2동 101호~2502호    |                                       |
|     |       | 5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2동 103호~2504호    |                                       |
|     |       | 6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2동 105호~2506호    |                                       |
|     | 내흥동   | 32     | 1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3동 201호~2502호     |
|     |       |        | 2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3동 203호~2504호     |
|     |       |        | 3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3동 105호~2506호, 상가 |
| 4   |       |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4동 101호~2502호    |                                       |
| 5   |       |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4동 103호~2504호    |                                       |
| 6   |       |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4동 105호~2206호    |                                       |
| 33  |       | 현행과 같음 |                                      |                                       |
| 구암동 | 34    | 1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1동 201호~2902호      |                                       |
|     |       | 2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1동 203호~2904호      |                                       |
|     |       | 3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2동 201호~2902호      |                                       |
|     |       | 4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2동 203호~2904호      |                                       |
|     | 35    | 1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3동 201호~2903호      |                                       |
|     |       | 2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3동 104호~2905호      |                                       |
|     |       | 3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4동 201호~2903호      |                                       |
|     |       | 4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4동 104호~2905호      |                                       |
|     | 36    | 1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5동 101호~2602호      |                                       |
|     |       | 2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5동 203호~2804호      |                                       |
|     |       | 3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6동 201호~2902호      |                                       |
|     |       | 4      | 647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106동 203호~2304호, 상가동 |                                       |

|         |      |     |  |                                   |
|---------|------|-----|--|-----------------------------------|
| 내흥동     | 37   | 1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6동 101호~2002호       |                                   |
|         |      | 2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6동 103호~2004호       |                                   |
|         |      | 3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7동 201호~2002호       |                                   |
|         |      | 4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7동 203호~2004호       |                                   |
|         |      | 5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8동 101호~1802호       |                                   |
|         |      | 6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108동 103호~1804호, 상가   |                                   |
|         | 38   | 1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5동 101호~2502호      |                                   |
|         |      | 2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5동 103호~2504호      |                                   |
|         |      | 3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5동 105호~2206호      |                                   |
|         |      | 4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6동 101호~2502호      |                                   |
|         |      | 5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6동 103호~2504호      |                                   |
|         |      | 6   |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6동 105호~2206호      |                                   |
| 구암동     | 39   | 1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1동               |                                   |
|         |      | 2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2동 201호~2302호    |                                   |
|         |      | 3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2동 203호~2504호    |                                   |
|         |      | 4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3동, 상가           |                                   |
|         |      | 5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4동 201호~2802호    |                                   |
|         | 40   | 1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4동 203호~2804호    |                                   |
|         |      | 2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5동 101호~2902호    |                                   |
|         |      | 3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5동 203호~2804호    |                                   |
|         |      | 4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6동 201호~2902호    |                                   |
|         |      | 5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6동 203호~2704호    |                                   |
|         | 41   | 1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7동 201호~2802호    |                                   |
|         |      | 2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7동 203호~2905호    |                                   |
|         |      | 3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8동 201호~2602호    |                                   |
|         |      | 4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8동 203호~2804호    |                                   |
|         | 내흥동  | 42  | 1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1동 201호~2502호 |
|         |      |     | 2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1동 103호~2404호 |
| 3       |      |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2동 201호~2503호      |                                   |
| 4       |      |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2동 104호~2505호      |                                   |
| 5       |      |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3동 201호~2502호, 상가동 |                                   |
| 43      |      | 1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4동 101호~2403호      |                                   |
|         |      | 2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5동 101호~2502호      |                                   |
|         |      | 3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6동 101호~2302호      |                                   |
|         |      | 4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6동 103호~2304호      |                                   |
|         |      | 5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7동 101호~2202호      |                                   |
|         |      | 6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 107동 103호~2204호      |                                   |
| 동계      | 43   | 206 |  |                                   |
| 개정동     | 1~13 |     | 현행과 같음                                 |                                   |
| 수송동~지곡동 | 1~79 |     | 현행과 같음                                 |                                   |

|                         |      |       |                               |
|-------------------------|------|-------|-------------------------------|
| 지곡동                     | 80   | 1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1동  |
|                         |      | 2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2동  |
|                         |      | 3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3동  |
|                         |      | 4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4동  |
| 동계                      | 80   | 332   |                               |
| 나운동(나운동~<br>나운동(나운동2동)) |      |       | 현행과 같음                        |
| 나운동(나운동3<br>동)~미룡동      | 1~60 |       | 현행과 같음                        |
| 미룡동                     | 61   | 1     | 936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 101동 2층~12층  |
|                         |      | 2     | 936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 101동 13층~24층 |
|                         |      | 3     | 936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 102동 3층~11층  |
|                         |      | 4     | 936 제이아트 은파 더레이크 102동 12층~25층 |
| 동계                      | 61   | 236   |                               |
| 비응도동~<br>산북동            |      |       | 현행과 같음                        |
| 동총계                     | 534  | 2,288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 [별표]<br>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br><br>1. (현행과 같음)<br>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                  |                                     |                              | [별표]<br>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와<br>관련)<br><br>1. (현행과 같음)<br>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       |   |                                     |                                     |
| 동 명  | 통                | 반                                   | 관 할 지 번                      | 동 명  | 통     | 반 | 관 할 지 번                             |                                     |
| 구암동  | 1~7              |                                     | 생략                           | 구암동  | 1~7   |   | 현행과 같음                              |                                     |
| 내흥동  | 8~9              |                                     | 생략                           | 내흥동  | 8~9   |   | 현행과 같음                              |                                     |
| 구암동  | 10~16            |                                     | 생략                           | 구암동  | 10~16 |   | 현행과 같음                              |                                     |
| 내흥동  | 17~28            |                                     | 생략                           | 내흥동  | 17~28 |   | 현행과 같음                              |                                     |
| 내흥동  | 29               | 1                                   | 924 우미린 센텀오션<br>아파트 101동     | 29   |       | 1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1동 201호~2402호 |                                     |
|  |                  | 2                                   | 924 우미린 센텀오션<br>아파트 102동     |  |       | 2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1동 103호~2104호 |                                     |
|  |                  | 3                                   | 924 우미린 센텀오션<br>아파트 103동     |  |       | 3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2동 201호~2402호 |                                     |
|  |                  | 4                                   | 924 우미린 센텀오션<br>아파트 104동     |  |       | 4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2동 203호~2204호 |                                     |
|  | 5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3동 101호~2402호 |                              |  |       |   |                                     |                                     |
|  | 30               | 1                                   | 924 우미린 센텀오션<br>아파트 105동     | 30   |       | 1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3동 203호~2104호 |                                     |
|  |                  | 2                                   | 924 우미린 센텀오션<br>아파트 106동     |  |       | 2 | 924 우미린 센텀오션<br>아파트 104동            |                                     |
|  |                  | 3                                   | 924 우미린 센텀오션<br>아파트 107동     |  |       | 3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5동 201호~2502호 |                                     |
|  |                  | 4                                   | 924 우미린 센텀오션<br>아파트 108동, 상가 |  |       | 4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5동 203호~2504호 |                                     |
|  | 31               |                                     | 1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1동 101호~2503호  | 31    |   | 1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1동 101호~2502호 |
|  |                  |                                     | 2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1동 104호~2506호  |       |   | 2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1동 103호~2504호 |
|  |                  |                                     | 3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2동 101호~2503호  |       |   | 3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1동 105호~2506호 |
| 4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 | 4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             |  |       |   |                                     |                                     |

|          |       |                                     |  |                                      |    |  |                                    |
|----------|-------|-------------------------------------|--|--------------------------------------|----|--|------------------------------------|
| 내 흥 동    | 32    | 4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2동 104호~2506호      | 32                                   | 5  | 102동 101호~2502호<br>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2동 103호~2504호 |                                    |
|          |       | 5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3동 201호~2503호      |                                      | 6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2동 105호~2506호                    |                                    |
|          |       | 6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3동 204호~2506호, 상가  |                                      | 1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3동 201호~2502호                    |                                    |
|          |       | 1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4동 101호~2503호      |                                      | 2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3동 203호~2504호                    |                                    |
|          |       | 2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4동 104호~2206호      |                                      | 3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3동 105호~2506호, 상가                |                                    |
|          |       | 3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5동 101호~2503호      |                                      | 4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4동 101호~2502호                    |                                    |
|          | 4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5동 104호~2206호 | 5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4동 103호~2504호  |    |  |                                    |
|          | 5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6동 101호~2503호 | 6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4동 105호~2206호  |    |  |                                    |
|          | 6     | 926 한미발디 센트로 아파트<br>106동 104호~2206호 | 내 흥 동 33                                 | 현행과 같음                               |    |  |                                    |
|          | 구 암 동 | 34                                  | 1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1동 201호~2902호 | 34 | 1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1동 201호~2902호 |
|          |       |                                     | 2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1동 203호~2904호 |    | 2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1동 203호~2904호 |
|          |       |                                     | 3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2동 201호~2902호 |    | 3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2동 201호~2902호 |
|          |       |                                     | 4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2동 203호~2904호 |    | 4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2동 203호~2904호 |
| 35       |       | 1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3동 201호~2903호     | 35                                   | 1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3동 201호~2903호                     |                                    |
|          |       | 2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3동 104호~2905호     |                                      | 2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3동 104호~2905호                     |                                    |
|          |       | 3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4동 201호~2903호     |                                      | 3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4동 201호~2903호                     |                                    |
|          |       | 4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4동 104호~2905호     |                                      | 4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4동 104호~2905호                     |                                    |
| 36       |       | 1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5동 101호~2902호     | 36                                   | 1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5동 101호~2902호                     |                                    |
|          |       | 2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5동 203호~2904호     |                                      | 2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5동 203호~2904호                     |                                    |
|          |       | 3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6동 201호~2902호     |                                      | 3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6동 201호~2902호                     |                                    |
|          |       | 4                                   | 317-4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6동 203호~2904호, 상가 |                                      | 4  | 647 더샵 프리미엘<br>아파트 106동 203호~2904호, 상가                 |                                    |
| 구 암 동 37 |       | 1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 구 암 동 37                             | 1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                                       |                                    |

|    |    |     |  |     |    |   |   |
|----|----|-----|--|-----|----|---|---|
| 동계 | 36 | 168 |  |     |    |   | 106동 101호~2002호                         |
|    |    |     |  |     |    | 2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6동 103호~2004호     |
|    |    |     |  |     |    | 3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7동 201호~2002호     |
|    |    |     |  |     |    | 4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7동 203호~2004호     |
|    |    |     |  |     |    | 5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8동 101호~1802호     |
|    |    |     |  |     |    | 6 | 924 우미린 센텀오션 아파트<br>108동 103호~1804호, 상가 |
|    |    |     |  |     | 38 | 1 | 926 한라밸디 센트로 아파트<br>105동 101호~2502호     |
|    |    |     |  |     |    | 2 | 926 한라밸디 센트로 아파트<br>105동 103호~2504호     |
|    |    |     |  |     |    | 3 | 926 한라밸디 센트로 아파트<br>105동 105호~2206호     |
|    |    |     |  |     |    | 4 | 926 한라밸디 센트로 아파트<br>106동 101호~2502호     |
|    |    |     |  |     |    | 5 | 926 한라밸디 센트로 아파트<br>106동 103호~2504호     |
|    |    |     |  |     |    | 6 | 926 한라밸디 센트로 아파트<br>106동 105호~2206호     |
|    |    |     |  |     |    | 1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br>아파트 101동             |
|    |    |     |  |     | 39 | 2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br>아파트 102동 201호~2302호  |
|    |    |     |  |     |    | 3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br>아파트 102동 203호~2504호  |
|    |    |     |  |     |    | 4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br>아파트 103동, 상가동        |
|    |    |     |  |     |    | 5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br>아파트 104동 201호~2802호  |
|    |    |     |  | 구암동 |    | 1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br>아파트 104동 203호~2804호  |
|    |    |     |  |     | 40 | 2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br>아파트 105동 101호~2302호  |
|    |    |     |  |     |    | 3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br>아파트 105동 203호~2804호  |
|    |    |     |  |     |    | 4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br>아파트 106동 201호~2302호  |
|    |    |     |  |     |    | 5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br>아파트 106동 203호~2704호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7동 201호~280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7동 283호~2905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8동 201호~280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8동 283호~2804호</td> </tr> <tr>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내홍동</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1동 201호~250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1동 103호~2404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2동 201호~2503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2동 104호~2505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3동 211호~212호, 상동</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3</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4동 101호~2403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5동 101호~250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6동 101호~230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6동 103호~2304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7동 101호~220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43</td> <td style="text-align: center;">206</td> <td></td> </tr> </table> | 41   | 1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7동 201호~2802호 | 2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7동 283호~2905호 | 3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8동 201호~2802호 | 4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8동 283호~2804호 | 내홍동 | 42 | 1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1동 201호~2502호 | 2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1동 103호~2404호 | 3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2동 201호~2503호 | 4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2동 104호~2505호 | 5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3동 211호~212호, 상동 | 43   | 1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4동 101호~2403호 | 2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5동 101호~2502호 | 3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6동 101호~2302호 | 4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6동 103호~2304호 | 5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7동 101호~2202호 | 동계 | 43                           | 206 |    |     |  |
|---|------|-------------------------------------|-------------------------------------|---------|--|------|---|-------------------------------------|-------------|-------------------------------------|---|-------------------------------------|----|-------------------------------------|-----|----|--|----------------------------------|---|----------------------------------|---------|----------------------------------|------|----------------------------------|--------|-------------------------------------|------|---|----------------------------------|-----|----------------------------------|---|----------------------------------|---|----------------------------------|---|----------------------------------|----|------------------------------|-----|----|-----|--|
| 41  | 1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7동 201호~280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7동 283호~290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8동 201호~280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648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108동 283호~280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홍동   | 42   | 1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1동 201호~250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1동 103호~240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2동 201호~250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2동 104호~250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3동 211호~212호, 상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 1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4동 101호~240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5동 101호~250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6동 101호~230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6동 103호~230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1019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107동 101호~220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계  | 43   |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동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통</th> <th style="text-align: center;">반</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 할 지 번</th> </tr> <tr> <td>개정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1~13</td> <td></td> <td>생략</td> </tr> <tr> <td>수송동~<br/>지곡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1~79</td> <td></td> <td>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79</td> <td style="text-align: center;">328</td> <td></td> </tr> </table> | 동 명  | 통                                   | 반                                   | 관 할 지 번 | 개정동  | 1~13 |   | 생략                                  | 수송동~<br>지곡동 | 1~79                                |   | 생략                                  | 동계 | 79                                  | 328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동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통</th> <th style="text-align: center;">반</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 할 지 번</th> </tr> <tr> <td>개정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1~13</td>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수송동~<br/>지곡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1~79</td> <td></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지곡동</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80</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1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2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3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4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d style="text-align: center;">332</td> <td></td> </tr> </table> | 동 명                              | 통 | 반                                | 관 할 지 번 | 개정동                              | 1~13 |                                  | 현행과 같음 | 수송동~<br>지곡동                         | 1~79 |   | 현행과 같음                           | 지곡동 | 80                               | 1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1동     | 2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2동     | 3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3동     | 4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4동 | 동계  | 80 | 332 |  |
| 동 명   | 통    | 반                                   | 관 할 지 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동   | 1~13 |                                     |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송동~<br>지곡동   | 1~79 |                                     |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계  | 79   | 3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명   | 통    | 반                                   | 관 할 지 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동   | 1~13 |                                     |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송동~<br>지곡동   | 1~79 |                                     |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곡동   | 80   | 1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1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2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3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332의 1 지곡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104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계  | 80   | 3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명                           | 통    | 반     | 관 할 지 번 |
|-------------------------------|------|-------|---------|
| 나운동(나<br>원동~<br>나운동(나<br>운2동) |      |       | 생략      |
| 나운동(나<br>운3동)~<br>미룡동         | 1~60 |       | 생략      |
| 동계                            | 60   | 232   |         |
| 비양도동~<br>산북동                  |      |       | 생략      |
| 동총계                           | 525  | 2,242 |         |

| 동 명                           | 통    | 반     | 관 할 지 번                          |
|-------------------------------|------|-------|----------------------------------|
| 나운동(나<br>원동~<br>나운동(나<br>운2동) |      |       | 현행과 같음                           |
| 나운동(나<br>운3동)~<br>미룡동         | 1~60 |       | 현행과 같음                           |
| 미룡동                           | 61   | 1     | 936 제이아트 은파<br>더레이크 101동 2층~12층  |
|                               |      | 2     | 936 제이아트 은파<br>더레이크 101동 13층~24층 |
|                               |      | 3     | 936 제이아트 은파<br>더레이크 102동 3층~11층  |
|                               |      | 4     | 936 제이아트 은파<br>더레이크 102동 12층~25층 |
| 동계                            | 61   | 236   |                                  |
| 비양도동~<br>산북동                  |      |       | 현행과 같음                           |
| 동총계                           | 534  | 2,288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02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시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 예정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수·효행·20년”을 “시정 기여도가 높은 20년”으로, “산업시찰”을 “국내외 시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br>-----<br>-----               |
| 1. <u>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u>             | 1. <u>시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예정 공무원</u> -----                   |
| 2. <u>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u>               | 2. <u>시정 기여도가 높은 20년</u> -----<br>----- <u>국내외 시찰</u> |
| 3. ~ 5. (생략)   | 3. ~ 5. (현행과 같음)                                      |
| 6. <u>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u>                             | <삭제>  |
| 7. ~ 10. (생략)  | 6. ~ 9.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03호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군산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공구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 공구"라 함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입하기 부담스럽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를 말한다.
- 2. "대여소"란 군산시장이 생활 공구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 공구 대여소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여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생활 공구를 대여할 수 있다.

-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시 소재의 직장을 다니는 자

**제5조(대여료)** 생활 공구 대여는 무료로 한다.

**제6조(대여절차)** ① 생활 공구 대여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여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생활 공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주소등 기본 개인 정보 제공 동의
2. 생활 공구 사용 방법 및 유의 사항
3. 생활 공구에 대한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사항

③ 시장은 대여 전 생활 공구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지하고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수량)** 시장은 신청순으로 가구당 최대 3개씩 대여한다.

**제8조(대여기간)** 대여 기간은 대여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반납)** ① 대여자는 생활 공구 사용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 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납받은 공구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대여소의 운영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0조(대여의 제한 등)** 시장은 생활 공구 대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대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생활 공구 대여 관리가 불량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공구를 대여받은 경우

제11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생활 공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하여야 하며, 생활 공구 관리대장 및 생활공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공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b>생활공구 대여신청서</b>   |   |     |      |   |
|---|---|-----|------|---|
| 사 용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소 재 지   | 군산시 | 전화번호 |   |
| 대여품목  | 품 목 명   |     | 대여수량 | 점 |
|   |   |     | 대여일자 |   |
| 확인사항  | 1) 【세트제품】 구성품 수량에 이상 없음    2) 제품이 정상 작동됨<br>3) 【전동공구 등】 제품 사용설명서를 교부 받았음<br>4) 사용자 부주의로 물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대여에 제한이 있음<br>5) <b>공구사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b><br><br><b>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b> |     |      |   |
| 위와 같이 ○○읍면동 생활공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br>20    년    월    일<br>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br>군산시 ○○읍면동장 귀중 |   |     |      |   |

..... (절 취 선)

.....

| <b>생활공구 대여승인서</b>  |  |  |      |   |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 대여품목   | 품목명  |  | 대여수량 | 점 |
| 대여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 |  |      |   |
| 위와 같이 ○○동 생활공구 사용을 승인합니다.<br>20    년    월    일<br>군산시 ○○읍면동장 |  |  |      |   |

[별지 제2호 서식]

### 생활공구 대여 관리대장

| 인 계 시 작 성 |        |             |        |   |                  | 인 수 시 작 성   |                       |        |
|-----------|--------|-------------|--------|---|------------------|-------------|-----------------------|--------|
| 연<br>번    | 성<br>명 | 연<br>락<br>처 | 주<br>소 | 대<br>여<br>물<br>품<br>내<br>역<br>(<br>품<br>명<br>과<br>수<br>량) | 대<br>여<br>기<br>간 | 반<br>납<br>일 | 인<br>수<br>자<br>성<br>명 | 비<br>고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04호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
-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
  -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다만,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연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9조와 관련)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60일전 | 전액반환  |
|   | 사용예정일 전일   | 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사용예정일 이후   |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br>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장사용기간(일수)}})$ ] + 위약금 |
|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60일전 | 전액반환  |
|   | 사용예정일 전일   | 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  |
|   | 사용예정일 이후   |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br>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장사용기간(일수)}})$ ] - 위약금 |

비고

1. "사용예정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일반사용자가 군산예술의전당에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p> <p>1. <u>군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u></p> <p>2. <u>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u></p> <p>3. <u>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원(願)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u></p> | <p>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1. <u>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u><br/><u>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u><br/><u>허가를 취소하는 경우</u><br/><u>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u><br/><u>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u><br/><u>하는 경우: 전액반환</u><br/><u>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u><br/><u>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u><br/><u>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u><br/><u>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u><br/><u>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u><br/><u>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u><br/><u>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u></p> <p>2. <u>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u><br/><u>허가를 취소하는 경우</u><br/><u>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u><br/><u>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u><br/><u>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u></p> |

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다만,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연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05호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
-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
  -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다만,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연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어린이공연장 사용료(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기준              | 사 용 료   |         | 비 고 |
|-----------------|---------|---------|-----|
|                 | 순수예술    | 대중공연    |     |
| 오전(09:00~12:00) | 25,000  | 125,000 |     |
| 오후(13:00~17:00) | 50,000  | 125,000 |     |
| 야간(18:00~22:00) | 75,000  | 150,000 |     |
| 1일(09:00~22:00) | 100,000 | 250,000 |     |

- 공연대관 1일이라 함은 09:00 ~ 22:00까지를 말한다.
- 순수예술은 무용, 연극, 국악, 클래식, 아동극, 어린이뮤지컬 등을 말한다.
- 대중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유치원, 초, 중, 고교 학생발표회 포함)등을 말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 심야(22:00)이후 사용료는 매 3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150%로 한다.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구          | 분                             | 기준    | 사용료    | 비 고                                |
|------------|-------------------------------|-------|--------|------------------------------------|
| 무 대<br>설 비 | 피아노(국산)                       | 1회    | 30,000 | 조율은 어린이공연장측 지정 조율사가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            | 조 명<br>설 비                    | 기본조명  | 1회     | 30,000                             |
|            | 무빙라이트                         | 1회    | 30,000 | 운용인력 별도                            |
| 음 향<br>설 비 | 녹음                            | 1회    | 20,000 | 녹음CD 사용자부담                         |
|            | 무선(핀)마이크                      | 대당/1회 | 10,000 | 운용인력 별도                            |
|            | 유선마이크(기본 3대)<br>(추가 대당 5,000) | 1회    | 10,000 |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
|            | 음향콘솔                          | 1회    | 50,000 |                                    |
|            | 빔프로젝트(13,000Ansi)             | 1회    | 40,000 | 운용인력 별도                            |
| 냉난방        | 냉 방                           | 1시간   | 30,000 |                                    |
|            | 난 방                           | 1시간   | 30,000 |                                    |
| 특별<br>전기료  | 일 반                           | 1회    | 10,000 |                                    |
|            | 앰프반입                          | 1회    | 30,000 |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 사용료의 반환기준(제9조와 관련)

| 구분  | 반환사유<br>발생일 | 반환금액  |
|---|-------------|---|
| 시장이 천재지변<br>또는 그 밖의<br>공익상 필요에<br>따라 사용허가를<br>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60일전  | 전액반환  |
|   | 사용예정일 전일    | 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사용예정일 이후    |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br>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사용기간(일수)}})$ ] + 위약금 |
| 사용자의 요청에<br>따라 사용허가를<br>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60일전  | 전액반환  |
|   | 사용예정일 전일    | 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  |
|   | 사용예정일 이후    |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br>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사용기간(일수)}})$ ] - 위약금 |

#### 비고

1. "사용예정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일반사용자가 군산예술의전당에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br/>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u>별표</u>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 <p>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br/>-----<br/><u>별표 1</u>-----<br/>-----.</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9조(사용료의 반환) <u>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1. <u>군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u></p> <p>2. <u>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u></p> <p>3. <u>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원(願)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u></p> | <p>제9조(사용료의 반환)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u></p> <p>1. <u>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u><br/>가. <u>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u><br/>나. <u>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u></p> |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  
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  
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  
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  
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다만,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연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사용을 제  
한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06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10만원” 을 “12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수<br/>           당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br/>           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br/>           록된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 안<br/>           에서 중복되지 않게 월 <u>10만원</u><br/>           을 지급하며, 그 대상은 별표와<br/>           같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br/>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br/>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br/>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br/>           ②·③ (생략)</p> |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br/>           -----<br/>           -----<br/>           -----<br/>           ----- <u>12만원</u>-<br/>           -----<br/>           --. -----<br/>           -----<br/>           -----<br/>           -----.<br/>           ②·③ (현행과 같음)</p>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07호

###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군산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농촌유학시설 운영)**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농촌유학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관련 부서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진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08호

###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의 뜻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

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자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해당 시행계획을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비
2.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09호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분문 중 “2025.12.31.”을 “2030.12.3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br/> 한은 <u>2025.12.31.</u>까지로 한다.<br/>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br/> 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br/> ---<u>2030.12.31.</u>-----<br/> -----<br/> -----.</p>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10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장사시설”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장사시설로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시장이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화장된 골분을 땅에 매장하여 분묘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봉분 및 봉분이 없는 평분(平墳), 평장(平葬)]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하며, 화장한 골분이라 하더라도 땅에 매장하여 분묘로 설치하였다면 이는 “매장”이므로 다른 장사시설로 옮길 때에는 개장신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로 안치된 골분은 포함하지 않음)
5. “골분”이란 시신, 유골을 화장한 후 그 남은 뼈를 갈아 만든 가루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합장”이란 2명 이상을 같이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외국인 관내 거주자”란 다음 각 목에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군산시에 거소를 두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

9. “사용권”이란 시립장사시설 사용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사용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가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1. 선진화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 2.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의 지원
-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자연장 유도
-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 수립·시행

제5조(묘지 등의 수급 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도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장 공설묘지

제6조(명칭 및 위치) ① 공설묘지의 명칭은 군산시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라 한다.

② 공설묘지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16, 산22, 산23, 산24, 452-3번지와 군산시 오식도동 503-2번지에 둔다.

③ “부부장지”란 화장된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공설묘지를 말한다.

④ “가족장지”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공설묘지를 말한다.

제7조(사용 신고 등)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신을 분묘 형태로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2. 기매장된 유골을 화장 후 유골 또는 골분으로 안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용 묘지 구역은 기신고 설치한 장소에 최대 6기의 유골 또는 골분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기간 및 관리)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권은 최초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분묘 사용권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2회에 한하여 15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자격)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제8조의 사용권을 가진 이용자가 관내·외 안치되어 있는 유골 또는 골분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

제10조(분묘의 설치기준) ① 분묘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와 규격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시신을 분묘로 매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 둘레석은 세로 2미터 가로 1미터 이내이며 비석은 1미터 이하로 한다.

③ 유골 또는 골분으로 안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표지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 둘레석은 세로 2미터 가로 1미터 이내로 하고 안치 기수는 최대 6기 이하로 한다.

제11조(합장 허용)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을 가진 이용자가 군산시 관내·외에 유골 또는 골분으로 모셔진 연고자를 합장(부부장지, 가족장지)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골분의 형태로 허용한다.(단, 기 매장된 배우자가 공설묘지에 매장된 경우에는 동일한 위치에 합장을 허용한다.)

제12조(사용권의 승계 및 취소) ① 공설묘지 사용권은 사망자가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 순으로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묘지 사용권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매장 또는 안치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 2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① 공설묘지 사용자는 별표 2의 공설묘지 사용료를 매장

신고할 때 또는 묘지 연장사용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합장을 하는 경우 기 매장자에 대한 사용료와 관계없이 합장 신고시 추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

### 제3장 화장시설 및 유택동산

제14조(명칭 및 위치) ① 화장시설의 명칭은 군산시 승화원(이하 “승화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승화원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에 둔다.

제15조(사용 신고) 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① 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 군민이 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7조(유택동산의 사용 신고) ①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택동산이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표 2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군민이 유택동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 제4장 봉안시설

제18조(명칭 및 위치) ① 봉안시설의 명칭은 군산시 추모관(이하 “추모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추모관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에 둔다.

③ “개인단(개인)”이란 안치단 1칸에 1구의 유골을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단(부부)”란 안치단 1칸에 2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④ “부부단”이란 부부단으로 구성된 안치단에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19조(유골 봉안) ① 추모관에 봉안하는 유골의 대상은 무연고 및 유연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② 추모 신관에 유골을 봉안 할 경우 시신 또는 관내 개장 유골을 화장 접수순에 따라 순번대로 안치 한다.

③ 추모 구관의 유골은 추모 신관으로 안치 할 수 없다. 단, 개인단(부부)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④ 유골을 봉안하는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유골을 인도할 수 있다.

제20조(사용 기간 및 관리) ① 봉안 사용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봉안 사용 기간을 15년씩 재사용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모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사용 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유골에 대하여는 영 제 24조 규정에 의거 5년간 보관하되, 5년이 지난 경우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

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에 합동 매장하거나 자연장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 허가 등) ① 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봉안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된 것이어야 하며 유골함을 봉인하여 안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골함은 봉안단의 크기에 적합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반시민(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전날까지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3. 관내의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4. 과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30년 이상 거주했던 관외자
5.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 안치된 사망자와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그 배우자가 관내·외 거주자라 할지라도 개인단(부부) 안치단에 합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당일 추모관 유골반환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2조제8호의 가목 및 나목에 기재된 조건을 갖춘자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

④ 추모관 안치단 유리문 개방은 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따라 연고자에 한해서 개방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관 사용자와 추모관 사용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추모관 사용료를 추모관 사용 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환불 규정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방안대장 등의 비치) 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추모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봉안 사항 및 유골 인도·인수 사항 등을 기재한 방안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원상복구 및 변상) 추모관 사용자 또는 방문자가 추모관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시설비를 변상 요구할 수 있다.

### 제5장 관 리

제2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묘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따른 자재 또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직원) 시립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해 장묘시설계를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사용료 감면)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범위는 별표 5와 같다)는 승화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제1호에 의한 대상자에 대해 공설묘지, 추모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3. 임피면 시립장사시설 인근 마을 주민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80%, 그 밖의 임피면민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4.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는 승화원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
5.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승화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6. 관내 무연고 사망자는 승화원 및 추모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7. 시장이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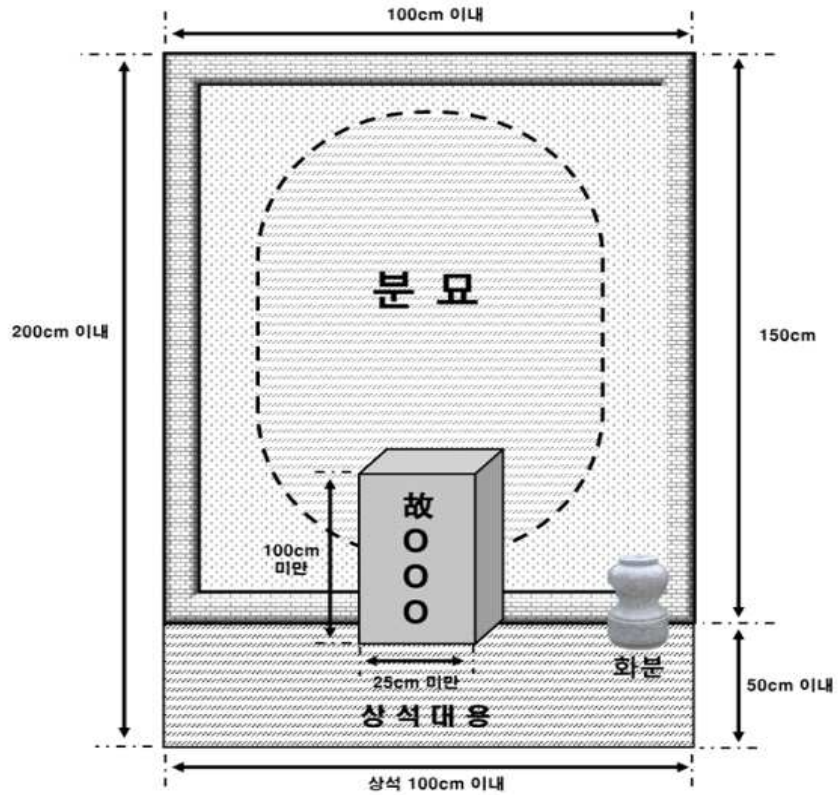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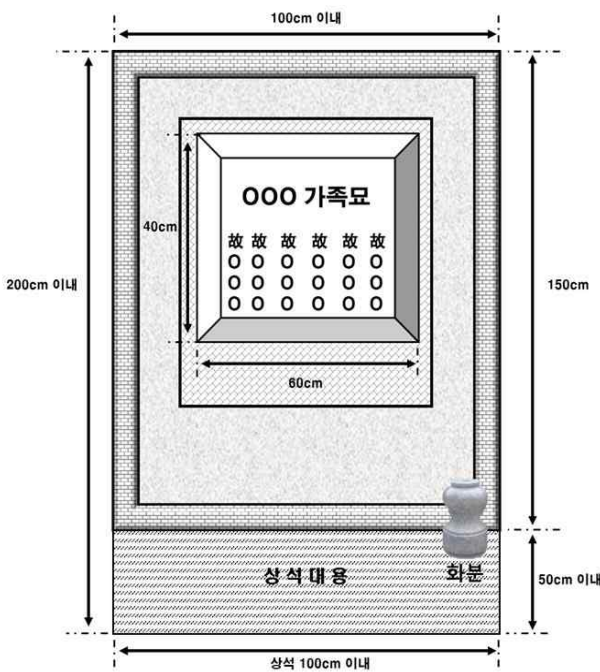
[별표 1]

1. 분묘의 매장 규격(제10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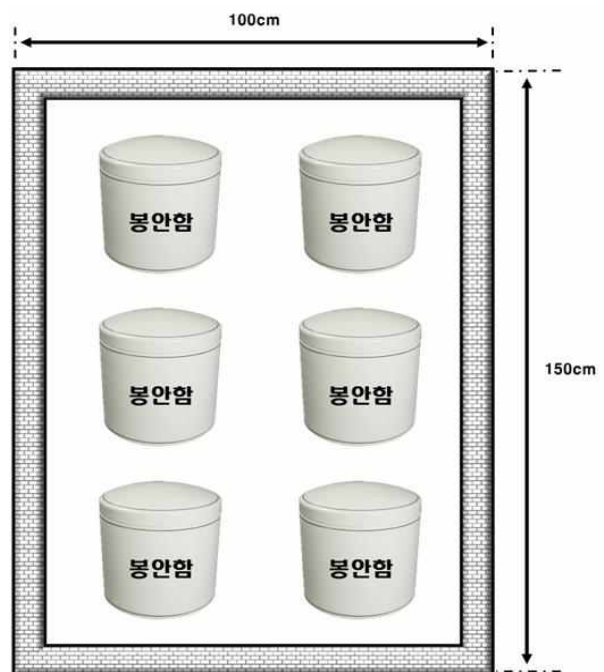


<분묘 설치기준(안)>

2. 유골 또는 분골의 안치 규격



<평장 외부설치(안)>



<평장 내부설치(안)>

## [별표 2]

**공설묘지 사용요금(제13조 관련)**

| 구 분    | 기 준 | 사용시점 | 기 간     | 사용료(단위:원) |
|--------|-----|------|---------|-----------|
| 시신(매장) | 1묘당 | 최초사용 | 30년     | 1,000,000 |
|        | 1묘당 | 연장사용 | 15년(1회) | 500,000   |
| 골분(매장) | 1기당 | 최초사용 | 30년     | 1,000,000 |
|        | 1기당 | 연장사용 | 15년(1회) | 500,000   |
|        | 1기당 | 추가사용 | -       | 500,000   |

**승화원 사용요금(제16조 관련)**

| 기준  | 구분    | 금 액 (원) |         | 비고 |
|-----|-------|---------|---------|----|
|     |       | 관 내     | 관 외     |    |
| 1건당 | 15세이상 | 60,000  | 500,000 |    |
|     | 15세미만 | 45,000  | 300,000 |    |
|     | 개장유골  | 30,000  | 300,000 |    |
|     | 사산아   | 15,000  | 150,000 |    |

**유택동산 사용료(제17조 관련)**

|          |         |
|----------|---------|
| 유택동산 사용료 | 20,000원 |
|----------|---------|

**추모관 사용요금(제22조 관련)**

| 구 분   | 기 준 | 사용료(단위:원) |         | 비 고     |          |
|-------|-----|-----------|---------|---------|----------|
|       |     | 관내        | 관외      |         |          |
| 개인단   | 개인  | 1구당(15년)  | 250,000 | 500,000 |          |
|       | 부부  | 1구당(15년)  | 200,000 | 400,000 | 1구 안치 가능 |
| 부 부 단 |     | 2구당(15년)  | 450,000 | 900,000 | 1구 안치 불가 |

※ 개인단 및 부부단은 안치한 날부터 이용 기간 15년을 적용되나, 기 안치된 개인단에 사용권자가 부부합장[개인단(부부)]을 추가 안치를 원할 경우 부부 안치 시점 기준으로 이용 기간을 재산정 한다.

※ 추모관 관외 사용요금은 제21조(사용허가 등)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별표 3]

공설묘자봉안시설 사용료 환불기준(제13조, 제22조 관련)

| 단 계 별 | 사용기간     | 환급률(%) | 비 고 |
|-------|----------|--------|-----|
| 1     | 6개월 이내   | 75     |     |
| 2     | 6개월초과 1년 | 70     |     |
| 3     | 1년초과 2년  | 65     |     |
| 4     | 2년초과 3년  | 60     |     |
| 5     | 3년초과 4년  | 55     |     |
| 6     | 4년초과 5년  | 50     |     |
| 7     | 5년초과 6년  | 45     |     |
| 8     | 6년초과 7년  | 40     |     |
| 9     | 7년초과 8년  | 35     |     |
| 10    | 8년초과 9년  | 30     |     |
| 11    | 9년초과 10년 | 25     |     |

## [별표 4]

##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마을(제29조 관련)

| 리 별 | 마을명        | 80%감면 | 50%감면 | 비 고 |
|-----|------------|-------|-------|-----|
| 읍내리 | 동 상        |       | ○     |     |
|     | 남 상        |       | ○     |     |
|     | 성 내        |       | ○     |     |
|     | 서 상        |       | ○     |     |
|     | 안 흥        |       | ○     |     |
| 축산리 | 교 축        |       | ○     |     |
|     | 계 남        |       | ○     |     |
| 미원리 | 서 모        |       | ○     |     |
|     | 미 산        |       | ○     |     |
|     | 서 원        | ○     |       |     |
|     | 남서원        | ○     |       |     |
| 보석리 | 구 절        | ○     |       |     |
|     | 왕 산        |       | ○     |     |
|     | 죽 엽        |       | ○     |     |
|     | 보 곡(보암,석곡) | ○     |       |     |
|     | 남 산        | ○     |       |     |
|     | 공 창        | ○     |       |     |
| 술산리 | 상 주        |       | ○     |     |
|     | 상 전        |       | ○     |     |
|     | 양 주        |       | ○     |     |
|     | 하 전        |       | ○     |     |
|     | 중 전        |       | ○     |     |
|     | 금 산        |       | ○     |     |
| 월하리 | 상 갈        |       | ○     |     |
|     | 농 막        |       | ○     |     |
|     | 중 갈        |       | ○     |     |
|     | 하 갈        |       | ○     |     |
|     | 서 황        |       | ○     |     |
| 영창리 | 소 령        |       | ○     |     |
|     | 대 령        |       | ○     |     |
|     | 신 기        |       | ○     |     |
|     | 창 성        |       | ○     |     |
|     | 만 신        |       | ○     |     |

## [별표 5]

##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29조제1호 관련)

| 법 률 명                         | 적 용 대 상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진몰군경, 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11호

###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이중언어”란 다문화가족의 부모 가운데 한쪽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말한다.

제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다문화가족 내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u>&lt;신설&gt;</u></p>   | <p>제2조(정의) -----<br/>-----.</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이중언어”란 다문화가족의 부모 가운데 한쪽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말한다.</u></p>                                     |
| <p>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6. ~ 8. (생략)</p> | <p>제4조(지원사업) -----<br/>-----<br/>-----.</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다문화가족 내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u></p> <p>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12호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 공장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군산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전기화재”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4.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공장의 전

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화재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공장인 경우
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보고·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 필요성 등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13호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방지에”를 “방지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공사중”을 “공사 중”으로,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로, “3억원”을 “5천만 원”으로 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부실공사”라 함은 설계·시공·감리·자재 사용 등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계약기준에 미치지 못해 구조적 결함, 안전 미비, 공용수명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설명회 개최 및)”을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부실시공”을 “부실공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행전”을 “시행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면통보 하여

야”를 “서면통보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도·감독시”를 “지도·감독 시”로 한다.

제6조 중 “각종공사”를 “각종 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사중 별표”를 “공사 중 별표 서식”으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게시여부”를 “게시 여부”로,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 까지”를 “시까지”로 한다.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수 및 처리
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③ 센터의 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한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발주부서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해당 공사 관련 사진, 설계서, 시공기록 등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2.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부실측정을

## 요구한 경우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 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준공표지판 등의 설치)”를“(부실공사 신고·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 또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의회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신고 내용을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집행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부실공사 방지 심의) ①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군산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1. 부실 공사 해당 여부
2. 부실 공사 등급 정도
3. 등급 정도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부실시공을”을 “부실공사를”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로, “입찰참”을 “입찰 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실벌점”을 “부실 벌점”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부실시공업체의 제재)”를 “(부실공사업체의 제재)”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공사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공사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 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위치, 사업개요 등 기본 정보
2. 공정별 공사 진행 현황
3. 주요 계약자의 성명(업체명), 계약 금액 및 기간
4. 하자보수 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시 홈페이지 또는 공공정보포털 등을 통해 수시

로 갱신하여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사정보의 전자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준공검사 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발주청이 발주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실공사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50만 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제19조(중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br/>-----<br/>----- 방지하기 위하여 -----<br/>-----.</p>   |
| <p>제2조(적용)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 등은 제외한다.</p> | <p>제2조(적용) -----<br/>-----<br/>공사 중 -----<br/>-----<br/>건설사업관리 -----<br/>----- 5천만 원 -----<br/>-----.<br/>-----<br/>-----.</p>                                  |
|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lt;신 설&gt;</p>  | <p>제3조(정의) -----<br/>-----.</p> <p>1. (현행과 같음)</p> <p>2. “부실공사”라 함은 설계·시공·감리·자재 사용 등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계약기준에 미치지 못해 구조적 결함, 안전미비, 공용수명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건설공사를 말한다.</p> |

2. ~ 5. (생략)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및)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면·동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공사감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 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5조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등) ① -----  
-----  
----- 부실공사 -----  
-----  
-----  
-----  
시행 전-----  
-----.

② -----  
-----  
-----  
-----  
----- 서면통보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사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도·감독 시-----  
-----  
-----  
-----.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

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 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공사 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5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생략)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시 즉시 공사감독관과 읍·면·동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절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 시 까지 하고 그 공사가

----- 각종공사 -----  
 -----  
 -----  
 -----  
 -----  
 -----  
 -----.

제8조(시공확인) ① -----  
공사 중 별표 서식-----  
 --- 5일 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게시 여부 -----  
 -----  
 -----  
 -----  
 ----- 요구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시까지 -----

준공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신 설>

제10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수 및 처리
  - 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
  - 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 ③ 센터의 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한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 (부실공사업체의 제재) ① -

--- 부실공사를 -----  
-----  
-----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  
입찰 참-----.

② -----  
-----  
----- 부실 벌점-----.

제16조(공사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공사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 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위치, 사업개요 등 기본 정보
2. 공정별 공사 진행 현황
3. 주요 계약자의 성명(업체명), 계약 금액 및 기간
4. 하자보수 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시 홈페이지 또는 공공정보포털 등을 통해 수시로 갱신하여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사정보의 전자공개에 필요한

<신 설>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준공검사 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발주청이 발주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실공사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

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50 만 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

제11조(준공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  
은 준공검사시 제2조의 규정에 따  
라 적용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  
발생시 연락처,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  
사 준공표지판을 반듯이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  
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  
다.

<신 설>

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  
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  
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  
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를 하는 경우

제11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  
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  
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  
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  
또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 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신 설>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 설>

③ 의회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신고 내용을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집행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발주부서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해당공사 관련 사진, 설계서, 시공기록 등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 2.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 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부실공사 방지 심의) ①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군산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부실 공사 해당 여부
2. 부실 공사 등급 정도
3. 등급 정도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14호

###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속가능한 일자리”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한다.

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 <p>제2조(정의) -----<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지속가능한 일자리</u>”란 <u>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한다.</u></p> |
| <p>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7. (생략)</p> | <p>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br/>-----<br/>-----.</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15호

###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에 따라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6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일반산업단지 및 군산농공단지 (이하 “군산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군산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제5조(허가구역 지정 기간의 축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전까지 최소 3개년 이상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소되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허가구역 지정 기간 축소 시에는 그 사유와 범위, 기간 등을 관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16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별표 1 제9호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9조”로,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신 설>  |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

[별표]1 제 9호

| 현<br>행  | 개<br>정<br>안   |
|---|---|
|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u>제7조</u> 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 <u>장애인 수첩</u> 및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소지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u>제9조</u> 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 <u>장애인등록증</u> 및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소지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규칙 제881호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을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간주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사용료 납부등)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p> | <p>제4조(사용료 납부등) ① -----<br/>-----<br/>----- 10-----<br/>-----.</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br/>-----<br/>----- 간주한다.</p> |
| <p>제5조(사용료등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p> <p>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p> <p>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p>             | <p>제5조(사용료등 반환) &lt;삭 제&gt;</p>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잔액을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p> <p>③ (생략)</p> | <p>&lt;삭제&gt;</p> <p>(현행 제3항과 같음)</p>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규칙 제882호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을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간주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안전요원은 4인 이상의 인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 4. 안전요원 및 공연스텝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연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5.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공연장 정리를 위하여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어야 한다.
- 6. 어린이공연장 시설물 점검은 매월 마지막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일정은 필요시 어린이공연장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사용료 납부등)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p>           | <p>제4조(사용료 납부등) ① -----<br/>-----<br/>----- 10-----<br/>-----.</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br/>-----<br/>----- 간주한다.</p> |
| <p>제5조(사용료등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p> <p>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p> <p>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p> | <p>제5조(사용료등 반환) &lt;삭 제&gt;</p> <p>&lt;삭 제&gt;</p>  |

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잔액을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생략)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공연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

-----  
-----.

1.·2. (현행과 같음)

3. 안전요원은 4인 이상의 인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및 공연스텝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연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5.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공연장 정리를 위하여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어야 한다.

6. 어린이공연장 시설물 점검은 매월 마지막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일정은 필요시 어린이공연장에서 정한다.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규칙 제883호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고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이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사용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권의 승계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택동산 사용 신청) 조례 제17조제1항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범위) ① 조례 제29조제3호에 따른 “임피면 시립장사시

설” 인근 마을주민과 임피면민이라 함은 임피면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되어 있다가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임피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봉안시설, 공설묘지 사용(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                                     |                                       |     |      |               |  |
|--|-------------------------------------|---------------------------------------|-----|------|---------------|--|
| 사<br>망<br>자  | 성 명                                 |                                       | 성 별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사망장소          |  |
|  | 사망일자                                |                                       |     |      | 사망원인          |  |
| 신<br>고<br>인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  | 전화번호                                |                                       |     |      | 사망자와의관계       |  |
| 이<br>용<br>(<br>기<br>간<br>연<br>장)<br><br>하<br>고<br>자<br>하<br>는<br>장<br>사<br>시<br>설<br>및<br><br>기<br>간   | 봉안시설( ) 매장(분묘)( ) 공설묘지(유골 또는 분골)( ) |                                       |     |      |               |  |
|  | 화장시설                                | 년 월 일 시                               |     |      |               |  |
|  | 봉안시설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     |      |               |  |
|  | 매장(분묘)<br>(매장년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br>( 년 월 일 시 분) |     |      |               |  |
|  | 유골(분골)<br>(매장년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br>( 년 월 일 시 분) |     |      |               |  |
|  | 접수번호                                |                                       |     | 신고내용 | 봉안, 분묘, 유골 번호 |  |
| 감<br>면<br>사<br>유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감면액  |               |  |
|  | [ ] 국가유공자                           |                                       |     | 납부액  |               |  |
|  | [ ] 기타                              |                                       |     |      |               |  |
| <p>「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군산시장 귀하</p> |                                     |                                       |     |      |               |  |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1부(봉안시설 또는 유택동산 사용자에 한함)
- 연고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 봉안시설, 공설묘지 사용(기간연장) 허가 증명서

|                  |        |            |       |          |         |     |
|------------------|--------|------------|-------|----------|---------|-----|
| 사<br>망<br>자      | 성 명    |            | 성 별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사망장소    |     |
|                  | 사망일자   |            |       |          | 사망원인    |     |
| 신<br>고<br>인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                  | 전화번호   |            |       |          | 사망자와의관계 |     |
| 신<br>고<br>내<br>용 | 신고시설   | (사용기간 : 년) |       |          | 신고번호    | 제 호 |
|                  | 봉안시설   | 년 월 일 ~    | 년 월 일 | 까지 ( 년간) |         |     |
|                  | 매장(분묘) | 년 월 일 ~    | 년 월 일 | 까지 ( 년간) |         |     |
|                  | 유골(분골) | 년 월 일 ~    | 년 월 일 | 까지 ( 년간) |         |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1. 이용 신고를 한 사용권은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매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시장에게 신고 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전한 풍속과 공서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묘지 최초 이용 기간 30년이나 봉안시설 이용 기간 15년이 종료되면 기간 연장 신청(15년씩 2회)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신청 당시 군산시 조례가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전이나, 분묘는 화장 봉안, 봉안당 유골은 자연장 하여야 하며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권의 취소 또는 임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 시립장사시설 사용권자 주소변경 신고서

|          |             |   |                 |  |
|----------|-------------|---|-----------------|--|
| 사용<br>시설 | 명칭          | 봉안시설(     ), 분묘(매장)(     ), 유골(골분)(     ) |                 |  |
|          | 번호          | 호   |                 |  |
| 신고<br>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사망자와의<br>관계 |   | 전화번호<br>(핸드폰번호) |  |
| 변경<br>사항 | 당초<br>(주소)  |   |                 |  |
|          | 변경<br>(주소)  |   |                 |  |
| 전화번호     |             |   | 핸드폰번호           |  |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                 |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주소지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시립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

|       |              |        |        |              |                |
|-------|--------------|--------|--------|--------------|----------------|
| 인 계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망자와의<br>관 계 |                |
| 인 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TEL ) |        | 사망자와의<br>관 계 |                |
| 신고사항  | 묘역(봉안)<br>명칭 |        | 매장(안치) |              | 묘지번호<br>(봉안번호) |
| 승계사유  |              |        |        |              |                |
| 첨부서류  | 승계권 입증서류 1부. |        |        |              |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을 위와 같이 승계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                  |                |                       |          |  |
|------------------|----------------|-----------------------|----------|--|
| 사<br>망<br>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사망장소     |  |
|                  | 사망일자           |                       | 사망원인     |  |
| 신<br>고<br>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 신<br>고<br>사<br>항 | 시 설 명          |                       | 시설번호     |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          |  |
|                  | 신고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          |  |
| 기납부한<br>사 용 료    |                | 입금 계좌번호<br>(금융기관)     |          |  |
| 반환사유             |                |                       |          |  |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1부. |                       |          |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 13조 및 제22조,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            |  |           |       |
|--|------------|--|-----------|-------|
| 제 호  |            |  |           | 처리기간  |
| <b>유택동산 사용 신청서</b>   |            |  |           | 즉시    |
| 사망자<br>(유골)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사망(개장) 장소  |  |           |       |
|  | 사망(개장) 연월일 |  | 사망(개장) 사유 |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환망자와워 |
|  |            |  |           | 전화번호  |
| <p>「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b>군산시장</b> 귀하</p> |            |  |           |       |

|  |     |  |        |       |
|--|-----|--|--------|-------|
| 제 호  |     |  |        |       |
| <b>유택동산 사용 신고증</b>   |     |  |        |       |
| 사망자<br>(유골)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환망자와워 |
|  |     |  |        | 전화번호  |
| <p>「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군 산 시 장</b> 인</p> |     |  |        |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훈령 제465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문직위 지정 직무분야 및 직무수행요건** (제19조제3항

관련)

| 소속               | 직위명             | 보직가능<br>직 급                                | 주요직무내용   | 직무수행요건                                      |                               |
|------------------|-----------------|--|--|---|-------------------------------|
|                  |                 |  |  | 필수요건  | 우대요건                          |
| 예술의<br>전당<br>관리과 | 무대조명<br>주 무 관   | 지방공업·<br>지방기계운영·<br>지방전기운영<br>주사 또는<br>주사보 | ◦군산예술의전당 대·소공연장<br>무대조명기기 운영 및 설치<br>◦무대조명 기기 점검 및 수리<br>◦공연장 무대조명 디자인 등   | 무대조명 운영<br>1년이상 근무자<br>무대예술전문인<br>무대조명 1급이상 | -                             |
|                  | 무대음향<br>주 무 관   | 지방공업·<br>지방기계운영·<br>지방전기운영<br>주사 또는<br>주사보 | ◦군산예술의전당 대·소공연장<br>무대음향기기 운영 및 설치<br>◦무대음향 기기 점검 및 수리<br>◦공연장 무대음향 디자인 등   | 무대음향 운영<br>1년이상 근무자<br>무대예술전문인<br>무대음향 1급이상 | -                             |
| 행정<br>지원과        | 인사<br>통계<br>주무관 | 주사보·서기<br>(직렬 무관)                          | ◦지방공무원 인사정보처리 및<br>분석<br>◦지방인사정보시스템 관리 운영<br>◦정·현원 등 인사관련 통계 작성  |   | 인사관련<br>분야 근무<br>경력 1년<br>이상자 |
|                  | 기록관<br>리<br>주무관 | 지방사서주사<br>주사보·서기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관리<br>◦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br>◦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및 기록물-<br>이관<br>◦기록물관리 지도·감독 및 교육<br>◦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및 폐기<br>◦보존서고 관리 및 기록물 공개<br>재분류<br>◦기록관리시스템 운영 | 기록물관리전문<br>요원자격증<br>기록관리학<br>석사학위 이상<br>취득자 |                               |
| 아동<br>정책과        | 아동보<br>호<br>주무관 | 지방사회복지<br>주사 또는<br>주사보 또는<br>서기            |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아동 및 행위<br>자,<br>관련인 조사<br>◦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br>통보<br>◦아동학대 유관기관(경찰서, 아동보<br>호<br>전문기관, 교육지원청 등)과의 협업<br>을<br>통한 아동보호 체계 마련           |   |                               |
| 감염병              | 역학조             | 지방간호·지방                                    | ◦감염병 발생 조사 및 원인 규명   | 역 학 조 사 관                                   |                               |

| 소속  | 직위명      | 보직가능<br>직<br>급                                 | 주요직무내용  | 직무수행요건      |      |
|-----|----------|--|---|-------------|------|
|     |          |  |   | 필수요건        | 우대요건 |
| 관리과 | 사<br>주무관 | 보건·지방의료<br>기술·지방보건<br>진료 주사 또는<br>주사보 또는<br>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적 분석 및 평가</li> <li>◦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데이터 분석</li> <li>◦방역 정책 수립 및 유관기관 협력</li> <li>◦감염병 대응 교육 및 홍보</li> </ul> | 교육훈련<br>수료자 | 과정   |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훈령 제466호

###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지방체육의 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단 장: 업무담당국장
- 2. 부 단 장: 업무담당과장
- 3. 부 장: 업무담당팀장
- 4. 주 무: 담당자
- 5. 조정 선수단: 감독 1, 코치 1, 트레이너 1, 선수 8명 이내

6. 육상 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5명 이내

**제3조(임무)** ① 단장은 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를 관리·감독 및 보호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과 주무는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2.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4.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수의 안전사고 예방 및 선수관리 상황의 보고

⑤ 선수는 훈련·대회에 출전하고, 재능기부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⑥ 트레이너는 지도자를 도와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중 부상 예방 등 선수 체력 관리 및 경기력 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 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기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부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기부 담당 팀장, 각 팀 지도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분

야 전문가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및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징계 의결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신규 채용·영입, 단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경기부 단원의 등급 산정 및 연봉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의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인권 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 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등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8

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요건)**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3.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③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 지도경력 1년 이상인 지도자
3.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④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출전 또는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⑤ 트레이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운동처방, 재활, 스포츠마사지 등 해당 분야의 경력 2년 이상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입단계약의 체결)** ① 지도자 및 선수, 트레이너는 서류심사를 통하여 시장과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지도자의 경우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단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사진(반명함) 3매.
3. 입단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4.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1부.
5.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6. 경기 실적증명서(중앙 경기단체 발행) 1통
7.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8. 이적동의서(타팀에서 이적 시) 1통
9. 경기 지도실적증명서(지도자에 한함) 1통
10. 지도자, 트레이너(운동처방, 마사지 등) 관련 자격증 사본 1통
1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통
12. 본인 명의 통장사본(급여지급) 1통

③ 입단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시 정한 날부터 1년부터 최대 3년까지로 하되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단원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액과 수당은 입단계약 시 체결하고 재계약 시는 매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비율을 참고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③ 단원의 보수 및 호봉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으로 하며 초임호봉 산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호봉은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1호봉씩 매년 1월 1일 승급하며, 지도자 및 선수의 호봉 승급은 공무원 호봉산정을 준용한다. 단, 제10조에 따른 등급 하락 시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강등할 수 있다.
3. 호봉산정 시에는 군산시 소속으로 근무한 연수만 포함한다.
4. 트레이너는 연봉제로 시행하며, 군산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연봉 기준에 따른다.

④ 연봉에 포함하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별표 2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⑥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는 단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퇴직금은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월평균 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기본급)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단원에게는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연 2회), 경기용 기구, 장비, 의약품, 물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요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등급)** ① 선수 등급은 3단계로 나누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등급: 15점 이상

2. B등급: 10점 이상 15점 미만

3. C등급: 10점 미만(A, B등급 제외자)

② 선수 등급산정 시 배점 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③ 신규 입단선수는 최근 2년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등급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1조(훈련 및 대회 참가 등)** ① 지도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 국내·외 대회출전, 전지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단장 또는 부단장에게 보고 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 각종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여비는 6급 이하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선수의 기량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도내 시범경기, 국내·외 우수선수 초청 경기 및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훈련 및 대회출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식비, 간식비, 목욕비 등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단원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조직 활성화 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재능기부와 나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려금 등)** ① 국내·외 각종 경기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와 같이 지급한다.

② 지도자에 대한 장려금은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단, 지도자는 선수가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1개 종목에 대한 장려금만 지급한다.

③ 국제대회에 출전한 단원에게는 별표 5에 따른 출전 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단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4.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지도자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단원은 공식 문서 및 행사 등에서 각자의 직책에 맞는 정식 호칭을 사용한다.

6.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의무, 집단행위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복무시간 등)** ① 단원의 복무 시간은 별표 8과 같으며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등은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무일 및 복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불참한 선수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훈련계획 수립 등)** 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훈련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사전에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제16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단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경기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병가는 90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인 또는 직계존속 경조사 시 7일 범위 내 특별휴가를 할 수 있으며, 대회출전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합숙소)** ① 선수의 기량 향상과 사기 양양을 위해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합숙소 입소를 희망하는 단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와 선수단의 합숙소는 별도로 운영하고 합숙소 내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2인 1실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④ 합숙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추태, 소란 고성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
4.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5. 합숙소 내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사적 용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⑤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본인이 퇴소 의사를 표시할 때
3. 제17조 제4항의 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숙소 관리비 일체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교육 준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시행
2. 훈련과 관련하여 안전한 활동을 위한 조치(휴식, 훈련시간 조정 등)
3. 그 밖에 선수 및 지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중 부상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나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0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감원이 될 때
3.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제21조(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단장은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제2호의 휴직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단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휴직 기간의 보수는 호봉 월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이적 동의)** 단장은 단원이 이적 동의를 요청할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시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제13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③ 정직은 3개월간 호봉 월액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호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며,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 ⑤ 견책은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 ⑥ 해고된 단원은 재임단할 수 없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초임호봉 산정 기준표(제9조제3항 관련)

| 구 분    | 감독                  | 코치                  | A급                  | B급                  | C급                  |
|--------|---------------------|---------------------|---------------------|---------------------|---------------------|
| 봉 급 기준 | 일반직<br>6급12호봉<br>기준 | 일반직<br>7급15호봉<br>기준 | 일반직<br>7급16호봉<br>기준 | 일반직<br>7급12호봉<br>기준 | 일반직<br>8급12호봉<br>기준 |

[별표 2]

수당지급 기준표(제9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훈련수당    | 목욕비     | 숙소<br>운영비                    | 급식, 직급  | 간식비     | 지도자<br>직책수당 |
|------|---------|---------|------------------------------|---------|---------|-------------|
| 감독   | 300,000 | 100,000 | 50,000<br>(숙소<br>이용자에<br>한함) | 200,000 | 100,000 | 100,000     |
| 코치   | 300,000 | 100,000 |                              | 200,000 | 100,000 | 100,000     |
| 선수   | 300,000 | 100,000 |                              | 200,000 | 100,000 | -           |
| 트레이너 | 300,000 | 100,000 |                              | 200,000 | 100,000 | 100,000     |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별표 3]

**등급산정 배점 기준표(제10조제2항 관련)**

| 구 분<br>(마라톤) | 1위<br>(1위~5위) | 2위<br>(6위~10위) | 3위<br>(11위~15위) | 등외<br>(완주) |
|--------------|---------------|----------------|-----------------|------------|
| 국제대회         | 30점           | 20점            | 15점             | 8점         |
| 전국체육대회       | 10점           | 7점             | 5점              | 3점         |
| 전국규모대회       | 7점            | 5점             | 3점              | 2점         |

※ 전국 규모대회에서 참가팀이 10팀 미만인 경우 50%로 등급(배점) 산정

[별표 4]

## 장려금 지급 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구 분<br>(마라톤)             | 1위<br>(1위~5위) | 2위<br>(6위~10위) | 3위<br>(11위~15위) |
|--------------------------|---------------|----------------|-----------------|
| 전국규모대회                   | 1,000,000     | 500,000        | 300,000         |
| 전국체육대회                   | 2,000,000     | 1,000,000      | 500,000         |
| 아시아 경기 대회                | 4,000,000     | 2,000,000      | 1,000,000       |
| 세계 선수권 대회<br>(올림픽 경기 포함) | 10,000,000    | 4,000,000      | 2,000,000       |

- ※ 전국규모 대회에서 참가팀이 10팀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을 100분의 50 지급한다.
- ※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국이 10개국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을 100분의 50 지급한다.

[별표 5]

## 국제대회 출전 격려금 기준표(제12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지도자       | 선 수       | 비 고 |
|-------------------|-----------|-----------|-----|
| 올림픽 대회            | 1,000,000 | 1,000,000 |     |
| 아시안게임,<br>세계선수권대회 | 700,000   | 700,000   |     |
| 아시아선수권대회          | 500,000   | 500,000   |     |

※ 국가대표 감독, 코치, 선수로 발탁되어 출전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 훈련 시간 기준표(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하절기<br>(3월~10월) | 동절기<br>(11월~2월) | 비 고 |
|-----|-----------------|-----------------|-----|
| 오 전 | 09:00~12:00     | 09:30~12:00     |     |
| 오 후 | 15:00~18:00     | 15:00~17:30     |     |
| 토요일 | 09:00~12:00     | 09:30~12:00     |     |



[별지 제2호서식]

## 직장운동경기부(선수) 표준계약서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계약기간은 20 년 00월 00일부터 20 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국제 및 전국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홍보 활동, 사회봉사, 재능기부, 시상식 등 제1호 및 제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

② 근무지(근무장소) : 군산시 일원 및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

로서 대회출전, 훈련 등을 위한 지역의 장소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요일부터     요일까지 주     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 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 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호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유급주휴일(매주     요일, 다만, 선수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며,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제1호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선수 활동의 대가에 따른 임금(월 급여와 제수당 포함)과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장려금 등을 지급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 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54호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 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선수는 훈련 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 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제7조제6항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임금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임금은 연봉으로 하되 연중 균등 분할 지급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1. 연 봉 : 금 \_\_\_\_\_ 원(₩000,000,000)(2~5 합계)

2. 기 본 급 : 금 \_\_\_\_\_ 원(₩000,000,000)( \_\_\_\_\_ 원 × 12개월)

3. 정근수당 : 금 \_\_\_\_\_ 원(₩000,000,000)( \_\_\_\_\_ 원 × 2회)

4. 명절휴가비 : 금 \_\_\_\_\_ 원(₩000,000,000)( \_\_\_\_\_ 원 × 2회)

5. 복리후생비 등 : 금 \_\_\_\_\_ 원(₩000,000,000)( \_\_\_\_\_ 원 × 12개월)

6. 포 상 금 :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름

7. 기타 급여(제수당 등)은 없음

8. 지 급 일 :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9. 지급방법 : 본인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임금을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 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 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퇴직금은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급한다. 만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회 참가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 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대상자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선수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 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의 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선수 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계속하여 선수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선수가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4. 선수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삭감 등 시의 사정에 의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② 선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가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삭감 등 시의 사정에 의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3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3.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신청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사업주)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
|-------------------|--------------------|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
| 대 표 자             | (인)                |

| (근로자)선수 |           |
|---------|-----------|
| 주 소     |           |
| 주민번호    |           |
| 연 락 처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은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과 같은 임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 (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 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입 단 신 청 서

|      |      |       |  |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      | (한자) | 연 락 처 |  |
| 종 목  |      |       |  |
| 주 소  |      |       |  |
| 최종학력 |      |       |  |
| 주요경력 |      |       |  |

상기 본인은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선수)로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훈련과 경기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다 음

1.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경기 또는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음
3. 훈련과 운영에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않겠음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장비(피복·물품) 구매요청서

|     |     |       |     |        |
|-----|-----|-------|-----|--------|
| 주 무 | 부 장 | 부단장   | 단 장 | 결<br>재 |
|     |     | 전 / 결 |     |        |

|      |  |
|------|--|
| 팀 명  |  |
| 구매물품 |  |
| 구매사유 |  |

| 품목 | 규격<br>(제품번호) | 수량 | 단위 | 단가 | 공급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작 성 일 |  | 작 성 자 | 직위 : 감독 성명 : | (인) |
|-------|--|-------|--------------|-----|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전지훈련 계획서

|     |     |        |     |        |
|-----|-----|--------|-----|--------|
| 주 무 | 부 장 | 부단장    | 단 장 | 결<br>재 |
|     |     | 전<br>결 |     |        |

|      |  |      |  |
|------|--|------|--|
| 팀 명  |  |      |  |
| 훈련명  |  |      |  |
| 훈련기간 |  | 훈련장소 |  |
| 참여인원 |  |      |  |

|      |  |
|------|--|
| 훈련목표 |  |
| 훈련내용 |  |
| 기타사항 |  |

|     |  |     |         |      |     |
|-----|--|-----|---------|------|-----|
| 작성일 |  | 작성자 | 직위 : 감독 | 성명 : | (인) |
|-----|--|-----|---------|------|-----|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 대 회 출 전 계 획 서

|     |     |        |     |        |
|-----|-----|--------|-----|--------|
| 주 무 | 부 장 | 부 단 장  | 단 장 | 결<br>재 |
|     |     | 전<br>결 |     |        |

|       |  |      |  |
|-------|--|------|--|
| 팀 명   |  |      |  |
| 대 회 명 |  |      |  |
| 대회기간  |  | 대회장소 |  |
| 출전기간  |  | 참가인원 |  |

|              |      |    |          |    |
|--------------|------|----|----------|----|
| 출전목표         |      |    |          |    |
| 대회참가<br>세부사항 | 출전종목 | 성명 | 목표성적(기록)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작 성 일 |  | 작 성 자 | 직위 : 감독 성명 : (인) |
|-------|--|-------|------------------|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 훈 련 일 지

|     |        |       |     |        |
|-----|--------|-------|-----|--------|
| 감 독 | 부 장    | 부 단 장 | 단 장 | 결<br>재 |
|     | 전<br>결 |       |     |        |

|      |               |      |   |      |  |
|------|---------------|------|---|------|--|
| 훈련일시 |               |      |   |      |  |
| 훈련장소 |               |      |   |      |  |
| 참여인원 | 명             | 불참인원 | 명 | 불참사유 |  |
| 훈련내용 | 오 전           |      |   |      |  |
|      | 오 후           |      |   |      |  |
| 기타사항 |               |      |   |      |  |
| 차량운행 | 출발지           |      |   | 운행거리 |  |
|      | 목적지<br>(운행목적) |      |   | 누적거리 |  |

[별지 제10호서식]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입소 신청서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종 목 | <input type="checkbox"/> 조정 | <input type="checkbox"/> 육상 | 연 락 처 |

## 《합숙소 입소자 준수사항》

- 합숙소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음주, 추태, 소란 고성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
  -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 합숙소 내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 사적 용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 입소자는 비품, 시설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상기 본인은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입소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며 합숙소 이용을 위한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 이 적 동 의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재 직 기 간 :

前 소 속 :

現 소 속 :

상기인은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_\_\_\_\_선수로 0000  
년 00월 00일 사직원을 제출한바, \_\_\_\_\_으로의 이적(계약)  
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자 :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직위: 성명: (인)

군산시 공고 제2025-2700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조문 정비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신설·정비 등 필요

2. 주요내용

- 인용 조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사항 신설 및 정비 필요(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안 제2조)
-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문장의 명확성 향상(안 제4조, 제5조)
- 시행규칙 서식 개편(인용 조례 조문 정비 등)

3. 입법예고 기간: 2025. 12. 15.(월)~2026. 1. 5.(월) / 21일간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 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전 화) 063-454-3332 (팩 스) 063-454-6020

(이메일) [leeyg461@korea.kr](mailto:leeyg461@korea.kr)

○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전화 063-454-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 이 유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 수학여행단체를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국내·외 일반인관광객을 시로 유치하여 당일 관광상품을 운영한 여행사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한 여행사의 지원은 10명 이상 유치한 경우를 말하며, 1명당 5천원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가 중복 해당될 경우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초청에 의한 행사 참여나 팸투어에 의한 관광
3.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4. 관광객 유치 계획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경우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제2조제1항의 숙박 관광객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조건)**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조건은 관내에서 숙박하고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지원조건은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제6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의한 지원 내용 및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은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2.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숙박관광객 지원기준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구 분 |           | 지원기준<br>인 원 | 지 원 액             |
|-----|-----------|-------------|-------------------|
| 외국인 | 일반<br>관광객 | 1회 10명      |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     | 수학<br>여행단 | 1회 20명      |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 내국인 | 일반<br>관광객 | 1회 15명      |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     | 수학<br>여행단 | 1회 20명      |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별표 2]

## 당일 관광객 지원기준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구 분                 | 지 원<br>최소인원 | 1 명 당<br>지원금액 | 최 대<br>지원액 |
|---------------------|-------------|---------------|------------|
| 내국인 관광객<br>(일반인관광객) | 15명         | 5,000원        | 3,000천원    |
| 외국인 관광객<br>(일반인관광객) | 10명         | 5,000원        | 3,000천원    |

(별지 제1호서식)

### (여행사명)

수 신 : 군산시장(관광진흥과장)

제 목 :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여행사 현황

|      |  |      |  |       |  |  |
|------|--|------|--|-------|--|--|
| 여행사명 |  |      |  | 대표자   |  |  |
| 소재지  |  |      |  |       |  |  |
| 업종   |  | 등록번호 |  | 등록연월일 |  |  |
| 연락처  |  |      |  | FAX   |  |  |

#### 관광객 유치계획

| 관광유형 | 관광기간 | 방문객수 |     | 주요 방문지 | 인솔자 |     |
|------|------|------|-----|--------|-----|-----|
|      |      | 내국인  | 외국인 |        | 성명  | 연락처 |
|      |      |      |     |        |     |     |

- 숙박 예정 업소명 :
- 음식점 이용 예정 업소명 :

#### 국제선교통편 이용계획

| 관광객 국적 | 인원 | 입 국        |            |       | 출 국 |      |       |
|--------|----|------------|------------|-------|-----|------|-------|
|        |    | 출발일 (출발장소) | 입국일 (입국장소) | 교통편명칭 | 예정일 | 출국장소 | 교통편명칭 |
|        |    |            |            |       |     |      |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시 관광을 실시하고자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관광여행 일정표 1부.  
 2.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의2서식)

### 관광여행 일정표(예시)

| 구분               | 시 간         |    |          | 주 요 일 정 | 비 고 |  |
|------------------|-------------|----|----------|---------|-----|--|
|                  | 부터          | 까지 | 소요<br>시간 |         |     |  |
| 당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br>박<br>2<br>일 | 첫<br>째<br>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둘<br>째<br>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      |  |  |      |     |  |       |  |
|------|--|--|------|-----|--|-------|--|
| 여행사명 |  |  |      | 대표자 |  |       |  |
| 소재지  |  |  |      |     |  |       |  |
| 업종   |  |  | 등록번호 |     |  | 등록연월일 |  |
| 거래은행 |  |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 연락처  |  |  |      | FAX |  |       |  |

관광객 유치실적

| 관광유형 | 관광기간 | 방문객수 |     | 주요 방문지 | 인솔자 |     |
|------|------|------|-----|--------|-----|-----|
|      |      | 내국인  | 외국인 |        | 성명  | 연락처 |
|      |      |      |     |        |     |     |

국제선교통편 이용실적(외국인관광객 유치시 작성)

| 관광객 국적 | 인원 | 입국         |            |        | 출국  |      |        |
|--------|----|------------|------------|--------|-----|------|--------|
|        |    | 출발일 (출발장소) | 입국일 (입국장소) | 교통편 명칭 | 예정일 | 출국장소 | 교통편 명칭 |
|        |    |            |            |        |     |      |        |

보상금 신청내역

|       |    |      |     |   |
|-------|----|------|-----|---|
| 지급신청액 | 일금 | 원(₩) |     | 원 |
| 산출내역  |    | 원 ×  | 명 × | 박 |
|       |    | 원 ×  | 명 × | 박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별지 제2호의2서식) 1부.
  2.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별지 제2호의3서식) 및 관광지 방문 사진첩 1부.
  3. 여행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보증서 사본 1부.
  4. 단체관광객 숙박 확인서(별지 제2호의4서식) 1부. (숙박관광에 한함)
  5. 수학여행단 유치 확인서(별지 제2호의5서식) 1부. (수학여행단 유치에 한함)
  6. 단체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의6서식) 1부. (당일관광에 한함)
  7.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 1부. (당일관광에 한함)
  8. 승선(탑승)확인서 1부. (국제선교통편 이용에 한함)
  9. 통장 사본 1부.

※ 공지사항 |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의4서식)

## 단체관광객 숙박 확인서

**여행사 현황**

|      |      |       |       |
|------|------|-------|-------|
| 여행사명 |      | 대표자   |       |
| 소재지  |      |       |       |
| 업종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연락처  | FAX  |       |       |
| 인솔자  | 직책 : | 성명 :  | 휴대폰 : |

**숙박내역**

| 숙박일자 | 이용객실수 | 숙박인원 |     |     | 여행사관계자 | 비고 |
|------|-------|------|-----|-----|--------|----|
|      |       | 관광객  |     |     |        |    |
|      |       | 합계   | 내국인 | 외국인 |        |    |
|      |       | 명    | 명   | 명   | 명      |    |
|      |       | 명    | 명   | 명   | 명      |    |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숙박업소대표 귀하**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연락처 :

**군산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숙박비 지급 영수증(신용·현금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br>※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

(별지 제2호의5서식)

## 수학여행단 유치 확인서

 여행사 현황

|      |      |       |       |
|------|------|-------|-------|
| 여행사명 |      | 대표자   |       |
| 소재지  |      |       |       |
| 업종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연락처  | FAX  |       |       |
| 인솔자  | 직책 : | 성명 :  | 휴대폰 : |

 수학여행단 유치 내역

| 학교명 | 학년 | 여행기간 | 수학여행인원 |    |    | 군산지역<br>방문지 | 군산지역숙<br>박업소 |
|-----|----|------|--------|----|----|-------------|--------------|
|     |    |      | 합계     | 학생 | 교사 |             |              |
|     |    |      | 명      | 명  | 명  |             |              |

위와 같이 본사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 )학교장 귀하

상기 업체가 위와 같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학교명 :

소재지 :

학교장 : (직인)

연락처 :

군산시장 귀하

공지사항 수학여행단체별로 각 1건씩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의6서식)

## 단체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 여행사 현황

|       |      |       |       |
|-------|------|-------|-------|
| 여행사명  |      | 대 표 자 |       |
| 소재지   |      |       |       |
| 업 종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연 락 처 | FAX  |       |       |
| 인 술 자 | 직책 : | 성명 :  | 휴대폰 : |

### 음식점 이용 내역

| 이용일자 | 식사형태   | 식 사 인 원 |     |     | 여행사<br>관계자 | 비고 |
|------|--------|---------|-----|-----|------------|----|
|      |        | 관 광 객   |     |     |            |    |
|      |        | 합계      | 내국인 | 외국인 |            |    |
|      | 조·중·석식 | 명       | 명   | 명   | 명          |    |
|      | 조·중·석식 | 명       | 명   | 명   | 명          |    |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식사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인)

#### 음식점 대표 귀하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식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 군 산 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음식료 지급 영수증(신용·현금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br>※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
|------|--|

(별지 제3호서식)

##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 신청인

|      |  |       |  |
|------|--|-------|--|
| 여행사명 |  | 대표자   |  |
| 소재지  |  |       |  |
| 업종   |  | 등록번호  |  |
|      |  | 등록연월일 |  |
| 연락처  |  | FAX   |  |

### 관광상품 개발 계획

| 관광상품명 | 관광기간 | 관광코스  | 군산 체류일정 |      |
|-------|------|-------|---------|------|
|       |      |       | 체류기간    | 방문지역 |
|       |      |       | 박 일     |      |
| 모객국가  | 모객인원 | 홍보 계획 |         |      |
|       |      | 홍보지역  | 홍보매체    | 홍보기간 |
|       | 명    |       |         |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을 개발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군산시 공고 제2025-2710호**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및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실제 조사 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에 맞춰 용어·조문체계 정비(안 제2조).
- 나. 광역-기초 간 협업체계 구축(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반영(안 제9조).
- 라. 세무조사 절차 투명·명확화(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5조의2
- 나. 입법예고 : 2025. 12. 15. ~ 2026. 1. 5.(21일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협 의 : 기획예산과(법무의정), 여성가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협 의 완료

#### 4. 의견제출

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우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세무과)  
(전화) 063-454-2451 / (팩스) 063-452-8162(수신 여부 확인 필요)  
(전자우편) gloryim@korea.kr(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 세무조사계(063-454-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 건 | 비 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세무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과세대장의 작성·관리, 과세자료 처리 및 세원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상·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선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특별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4.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 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5. “세목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6. “부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7. “세무조사 유예”란 일정기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선정된 경우 그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18. “위탁조사” 또는 “위임조사”란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등) ① 시장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중첩(사업장 소재지가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거나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나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위탁조사 또는 위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법,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발된 유망 강소기업

2.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4년간 건당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유예기간내에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다만, 당해 과세물건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신탁법」에 따

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선정에 따른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방식)** ① 시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범위)**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중에 납세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목의 특성, 조세채권의 확보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기간)** ①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기간·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

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 달성을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① 제16조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제4장 세무조사 진행

**제18조(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설명 등을 한 이후에는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

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및 증빙서류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장소)**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

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시간)**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확대통지(별지 제4호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27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28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3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별표]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1조제2항 관련)

####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 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 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 군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

|          |                        |         |  |
|----------|------------------------|---------|--|
| 상호명(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
| 주소(사업장)  |                        |         |  |
| 수령장소     | *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         |  |

귀 시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류(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받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군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청 령 서 약 서

|          |  |         |  |
|----------|--|---------|--|
| 상호명(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
| 주소(사업장)  |  |         |  |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각종 세제혜택 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군산시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 처분 및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군산시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           |
|----|----|----|-----------|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150g/㎡)]



■ 군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군 산 시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납세자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상호명(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영업소) |  |         |  |

| 구 분       | 당 초 | 범 위 확 대 |
|-----------|-----|---------|
| 조사대상 세목   |     |         |
| 조사대상 기간   | ~   |         |
| 조사 기간     | ~   |         |
| 기타 사항     |     |         |
| 조사범위 확대사유 |     |         |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군 산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 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5-37호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상설 위원회 전환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운영 등 정비
- 위원 성별 규정 추가, 타 조례와의 중복 규정 및 문구 정비 등

- 가. 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 비상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 나. 위원회 설치 규정 개정(안 제9조제1항)
- 다. 위촉직 위원 성별 규정 추가(안 제10조제1항)
- 라. 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 마. 회의 운영 규정 개정(안 제12조제1항)
- 바. 심의 및 자문사항 중 타 조례 중복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제7호)

※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

사. 위원 자진 사임 해촉 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호)

아.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2025. 12. 15.(월) ~ 2026. 1. 5.(월) <21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우편: 54091, 군산시 수송동로 58, 3층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2) 전화: 063-454-5832

(3) 팩스: 063-468-4763(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전자우편: yeonyoo8@korea.kr(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시행규칙안<br>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 또는”을 “안전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며, 회의 소집은”으로, “이를 소집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제17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p> <p>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 <p>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p> <p>① -----<br/>-----<br/>----- <u>범위 안</u> -----<br/>-----.</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p> <p>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p> <p>② 삭 제</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p> <p>1. ~ 6. (생략)</p> <p>7. <u>시민건강생활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u></p> <p>8. (생략)</p> <p>④·⑤ (생략)</p> | <p>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br/>-----<br/>-----<br/>-----<br/>----- <u>둘 수 있다</u>.<br/>-----</p> <p>③ -----<br/>-----.</p> <p>1. ~ 6. (현행과 같음)</p> <p>&lt;<u>삭 제</u>&gt;</p> <p>8.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
| <p>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p>   | <p>제10조(구성 등) ① -----<br/>-----</p>   |

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략)

2. 삭제

2.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생략)

<신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생략)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제>

<삭제>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  
--- 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며, 회의 소집은 ----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신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

-----  
-----  
--.

1. (현행과 같음)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제17조(수당 등) -----

----- 범위 안 -----  
-----  
-----  
-----.  
-----  
-----.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5-38호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의 필수 요건(의사 처방에 따른 관리기기 구입·사용)과 선택 요건(소득·연령)이 혼재된 규정을 정비하여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 요건 정비 (안 제8조)
  - (개정) 제1항제1호: 거주 요건(6개월 이상)을 충족하는 환자 규정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요건을 추가하여 필수 자격 통합.
  - (삭제) 제1항제2호다목: 제1호 통합에 따라 기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규정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15.(월) ~ 2026. 1. 5.(월) / 21일간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 54091, 군산시 수송동로 58, 3층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2) 전화: 063-454-5843
- (3) 팩스: 063-454-6038(수신 여부 확인 필요)
- (4) 전자우편: iyhlys08@korea.kr(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 063-454-5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2.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 1.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제 1형 당뇨병환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p> <p>1.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환자</p> <p>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 가. ~ 나. (생략)<br/> <u>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u></p> | <p>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p> <p>-----<br/> -----<br/> -----<br/> -----<br/> -----.</p> <p>1.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환자로서 <u>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u></p> <p>2. -----<br/>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

군산시 고시 제2025-223호

## 하천점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군 산 시 장

|              |                                   |      |      |
|--------------|-----------------------------------|------|------|
| 주 소          | 전북 군산시 해망로 264                    |      |      |
| 성명(법인명)      |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장                      |      |      |
| 하천명칭         | 옥회천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 점용장소<br>점용목적 |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0-2번지               |      |      |
| 점용면적         | 0.224m <sup>2</sup>               |      |      |
| 최초허가일        | 2025년 12월 1일                      |      |      |
| 점용기간         | 2025년 12월 1일 ~ 2035년 11월 30일(10년) |      |      |

군산시 고시 제2025-224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 나. 명 칭 : 군산교도소 대체복무 보관창고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182,890㎡, 주50동/지하2층~지상4층,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면적 22,569.77㎡, 연면적 43,979.48㎡  
- 금회 주1개동(50동)/1층 교정시설(교도소) 연면적 66㎡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군산교도소장
  - 나. 주 소 :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6. 1.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번호 | 토지소재지      |    | 지목 | 지적면적<br>(㎡) | 편입면적<br>(㎡) | 토지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비고 |
|----|------------|----|----|-------------|-------------|------------|----|-------|----|----|
|    | 읍면동        | 지번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1  | 옥구읍<br>옥정리 | 65 | 대  | 182,890     | 182,890     | 국<br>(법무부) |    |       |    |    |
| 계  |            |    |    | 182,890     | 182,890     |            |    |       |    |    |

군산시 고시 제2025-226호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2에 따라 직권말소 알림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군 산 시 장

- 1. 공고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 3. 공고기간 : 2025. 12. 9. ~ 2025. 12. 19.(11일간)
- 4. 대상업소

|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
| 일반<br>음식점 | 20190488005 | 곱창이야기<br>수송점 | 장*소 | 군산시 동수송8길21<br>(수송동) | 사업자등록폐업<br>(2025.3.31) | 영업신고사항<br>직권말소<br>(2025.12.22.) |

5. 직권말소일 : 2025. 12. 22.(월)

6. 고지사항

- 상기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군산시 위생과 식품위생계(☎ 063-454-3423)

군산시 공고 제2025 - 2570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옥서면 옥봉리 일원 [옥서 리도 204호(남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군 산 시 장

####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 읍면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노선 번호    | 도로구간              |           | 총연장 (km) | 주요 경과지 | 개발계획     |          | 지정사유       |
|-----|--------|-----|----------|-------------------|-----------|----------|--------|----------|----------|------------|
|     |        |     |          | 기점                | 종점        |          |        | 도로너비 (m) | 포장너비 (m) |            |
| 옥서면 | 리도     | 수외선 | 옥서 204호선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625-6 | 옥봉리 612-5 | 0.9      | 남동 마을  | 6.5      | 6.5      | 농어촌도로 확·포장 |

2. 사업명 : 옥서 리도 204호(남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 사업기간 : (당초) 2022.06.08. ~ 2025.12.31.

(변경) 2022.06.08. ~ 2026.12.31

4. 사업시행자 : 군산시청 건설과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지형도면고지도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불입)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     |       |            |    |                  |             |             |                        |             |    |               |    |
|--------------------|--------------|-----|-------|------------|----|------------------|-------------|-------------|------------------------|-------------|----|---------------|----|
| 입<br>번<br>에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1                  | 옥서면          | 옥봉리 | 625-6 | 625-6      | 도  | 128.0            | 21.0        | 군산시         |                        |             |    |               |    |
| 2                  | 옥서면          | 옥봉리 | 625-4 | 미분할        | 도  | 14.0             | 11.0        | 군산시         |                        |             |    |               |    |
| 3                  | 옥서면          | 옥봉리 | 625-7 | 625-7      | 전  | 388.0            | 388.0       | 군산시         |                        |             |    |               |    |
| 4                  | 옥서면          | 옥봉리 | 625-1 | 625-8      | 전  | 828.0            | 100.0       | 군산시         |                        |             |    |               |    |
| 5                  | 옥서면          | 옥봉리 | 623-1 | 623-4      | 답  | 1306.0           | 64.0        | 군산시         |                        |             |    |               |    |
| 6                  | 옥서면          | 옥봉리 | 623-3 | 623-3      | 답  | 68.0             | 68.0        | 군산시         |                        |             |    |               |    |
| 7                  | 옥서면          | 옥봉리 | 618-3 | 618-3      | 도  | 10.0             | 10.0        | 군산시         |                        |             |    |               |    |
| 8                  | 옥서면          | 옥봉리 | 618-1 | 618-4      | 전  | 1297.0           | 280.0       | 유*자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br>면 현대로 * |             |    |               |    |
| 9                  | 옥서면          | 옥봉리 | 565-2 | 미분할        | 도  | 387.0            | 309.0       | 군산시         |                        |             |    |               |    |
| 10                 | 옥서면          | 옥봉리 | 565-4 | 565-1<br>3 | 전  | 1384.0           | 148.0       | 유*자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br>면 현대로 * |             |    |               |    |
| 11                 | 옥서면          | 옥봉리 | 565-9 | 565-9      | 도  | 7.0              | 7.0         | 군산시         |                        |             |    |               |    |
| 12                 | 옥서면          | 옥봉리 | 565-6 | 565-1      | 전  | 577.0            | 150.0       | 군산시         |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지번(또는 연번)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내용 |    |
|           |              |  |     | 4  |    |              |             |          |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지번(또는 연번)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내용   |    |
| 13        | 옥서면          | 옥봉리 | 566-2 | 566-2 | 도  | 73.0         | 73.0        | 군산시      |                    |             |      |              |    |
| 14        | 옥서면          | 옥봉리 | 566-3 | 566-5 | 대  | 160.0        | 38.0        | 군산시      |                    |             |      |              |    |
| 15        | 옥서면          | 옥봉리 | 566-1 | 566-4 | 전  | 1544.0       | 124.0       | 군산시      |                    |             |      |              |    |
| 16        | 옥서면          | 옥봉리 | 569-1 | 569-3 | 답  | 918.0        | 219.0       | 유*자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 |             |      |              |    |
| 17        | 옥서면          | 옥봉리 | 569-2 | 569-4 | 도  | 60.0         | 12.0        | 군산시      |                    |             |      |              |    |
| 18        | 옥서면          | 옥봉리 | 570-2 | 570-2 | 도  | 26.0         | 26.0        | 미등기이     |                    | 강*홍         | 성산1리 | 토지대장상<br>소유자 |    |
| 19        | 옥서면          | 옥봉리 | 571-4 | 571-7 | 전  | 221.0        | 9.0         | 군산시      |                    |             |      |              |    |
| 20        | 옥서면          | 옥봉리 | 571-1 | 571-6 | 전  | 783.0        | 95.0        | 군산시      |                    |             |      |              |    |
| 21        | 옥서면          | 옥봉리 | 571-3 | 571-3 | 도  | 7.0          | 7.0         | 송**녀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일련<br>번호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              |     |       |       |    |                  |             |             | *                |             |    |               |    |
| 22       | 옥서면          | 옥봉리 | 574-3 | 574-3 | 도  | 26.0             | 26.0        | 군산시         |                  |             |    |               |    |
| 23       | 옥서면          | 옥봉리 | 574-1 | 574-4 | 전  | 672.0            | 163.0       | 군산시         |                  |             |    |               |    |
| 24       | 옥서면          | 옥봉리 | 575   | 575-6 | 전  | 737.0            | 41.0        | 박*천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br>*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일련<br>번호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25       | 옥서면          | 옥봉리 | 575-2 | 575-9 | 전  | 298.0            | 99.0        | 김*술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br>*                               |             |    |               |                   |
| 26-<br>1 | 옥서면          | 옥봉리 | 575-1 | 575-7 | 임  | 357.0            | 179.0       | 김*욱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br>로 47 *동 *호(낙민동,<br>동래벽산아파트)    |             |    |               | 지분<br>116/<br>357 |
| 26-<br>2 | 옥서면          | 옥봉리 | 575-1 | 575-7 | 임  | 357.0            | 179.0       | 양*해         | 부산광역시 금정구수림로<br>12, *동 *호(부곡동, 부곡<br>동에스케이아파트) |             |    |               | 지분<br>241/<br>357 |
| 27-<br>1 | 옥서면          | 옥봉리 | 575-1 | 575-8 | 임  | 357.0            | 40.0        | 김*욱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br>로 47 *동 *호(낙민동,<br>동래벽산아파트)    |             |    |               | 지분<br>116/<br>357 |
| 27-<br>2 | 옥서면          | 옥봉리 | 575-1 | 575-8 | 임  | 357.0            | 40.0        | 양*해         | 부산광역시 금정구수림로<br>12, *동 *호(부곡동, 부곡              |             |    |               | 지분<br>241/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br>번호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              |     |       |       |    |                  |             |             | 동에스케이아파트)                                      |             |     |                  | 357 |
| 28       | 옥서면          | 옥봉리 | 산84-2 | 산84-3 | 임  | 298.0            | 14.0        | 미등기02       |  | 양*준         |     | 토 지 대 장 상<br>소유자 |     |
| 29       | 옥서면          | 옥봉리 | 산82-1 | 산82-2 | 임  | 9223.0           | 13.0        | 미등기03       |  | 이*수         | 어은리 | 토 지 대 장 상<br>소유자 |     |
| 30       | 옥서면          | 옥봉리 | 576-3 | 576-5 | 전  | 754.0            | 2.0         | 미등기04       |  | 이*수         | 어은리 | 토 지 대 장 상<br>소유자 |     |
| 31       | 옥서면          | 옥봉리 | 576   | 576-4 | 전  | 1100.0           | 97.0        | 추*택         | 군산시 나운동 866-1<br>유원아파트 *동 *호                   |             |     |                  |     |
| 32       | 옥서면          | 옥봉리 | 산81   | 산81-1 | 임  | 2431.0           | 48.0        | 최*현         |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br>로 66, *동 *호(미장동,<br>수송공원삼성쉐르빌) |             |     |                  |     |
| 33       | 옥서면          | 옥봉리 | 산78   | 산78-1 | 임  | 1983.0           | 84.0        | 군산시         |  |             |     |                  |     |
| 34       | 옥서면          | 옥봉리 | 577   | 577-1 | 전  | 251.0            | 20.0        | 군산시         |  |             |     |                  |     |
| 35       | 옥서면          | 옥봉리 | 296   | 296-1 | 전  | 1025.0           | 64.0        | 군산시         |  |             |     |                  |     |
| 36       | 옥서면          | 옥봉리 | 297   | 297-1 | 전  | 1213.0           | 123.0       | 군산시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br>번호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연번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37 | 옥서면          | 옥봉리 | 298-1 | 298-3 | 전  | 1055.0           | 182.0       | 군산시            |    |             |     |               |    |
| 38 | 옥서면          | 옥봉리 | 299-1 | 299-3 | 전  | 552.0            | 97.0        | 군산시            |    |             |     |               |    |
| 39 | 옥서면          | 옥봉리 | 300-1 | 300-3 | 대  | 565.0            | 121.0       | 군산시            |    |             |     |               |    |
| 40 | 옥서면          | 옥봉리 | 301-1 | 301-3 | 대  | 301.0            | 82.0        | 군산시            |    |             |     |               |    |
| 41 | 옥서면          | 옥봉리 | 302-1 | 302-3 | 대  | 804.0            | 209.0       | 군산시            |    |             |     |               |    |
| 42 | 옥서면          | 옥봉리 | 316-1 | 316-4 | 대  | 278.0            | 88.0        | 군산시            |    |             |     |               |    |
| 43 | 옥서면          | 옥봉리 | 317   | 317-1 | 대  | 181.0            | 14.0        | 군산시            |    |             |     |               |    |
| 44 | 옥서면          | 옥봉리 | 318-2 | 318-7 | 전  | 522.0            | 52.0        | 군산시            |    |             |     |               |    |
| 45 | 옥서면          | 옥봉리 | 318-1 | 318-6 | 답  | 331.0            | 103.0       | 군산시            |    |             |     |               |    |
| 46 | 옥서면          | 옥봉리 | 318-3 | 318-8 | 도  | 17.0             | 9.0         | 미등기05          |    | 고*삼         | 301 | 토지대장상<br>소유자  |    |
| 47 | 옥서면          | 옥봉리 | 1673  | 미분할   | 구  | 8063.0           | 54.0        | 국(농림축<br>산식품부) |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지번(면적)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48     | 옥서면          | 옥봉리 | 319 | 319-1 | 답  | 513.0            | 13.0        | 강*구         | 익산시 영등동 771-2<br>비사별아파트 *동 *호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지번(면적)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49     | 옥서면          | 옥봉리 | 318-4 | 318-4 | 도  | 23.0             | 23.0        | 미등기06       |                  | 고*삼         | 301 | 토지대장상<br>소유자  |    |
| 50     | 옥서면          | 옥봉리 | 318-5 | 318-5 | 도  | 17.0             | 17.0        | 미등기07       |                  | 고*삼         | 301 | 토지대장상<br>소유자  |    |
| 51     | 옥서면          | 옥봉리 | 316-2 | 316-2 | 도  | 20.0             | 20.0        | 조*연         | 옥구군 옥구읍 옥봉리<br>* |             |     |               |    |
| 52     | 옥서면          | 옥봉리 | 315-1 | 315-1 | 전  | 46.0             | 46.0        | 군산시         |                  |             |     |               |    |
| 53     | 옥서면          | 옥봉리 | 315-2 | 315-2 | 도  | 26.0             | 26.0        | 미등기08       |                  | 고*일         | 282 | 토지대장상<br>소유자  |    |
| 54     | 옥서면          | 옥봉리 | 314-2 | 314-2 | 도  | 10.0             | 10.0        | 미등기09       |                  | 오*순         | 314 | 토지대장상<br>소유자  |    |
| 55     | 옥서면          | 옥봉리 | 313-2 | 313-2 | 도  | 13.0             | 13.0        | 미등기10       |                  | 강*선         | 313 | 토지대장상<br>소유자  |    |
| 56     | 옥서면          | 옥봉리 | 302-2 | 302-2 | 도  | 26.0             | 26.0        | 강*선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br>번호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              |     |       |       |    |                  |             |             | *                |             |     |               |    |
| 57       | 옥서면          | 옥봉리 | 301-2 | 301-2 | 도  | 26.0             | 26.0        | 미등기11       |                  | 고*삼         | 301 | 토지대장상<br>소유자  |    |
| 58       | 옥서면          | 옥봉리 | 300-2 | 300-2 | 도  | 13.0             | 13.0        | 김*남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br>* |             |     |               |    |
| 59       | 옥서면          | 옥봉리 | 299-2 | 299-2 | 도  | 10.0             | 10.0        | 군산시         |                  |             |     |               |    |
| 60       | 옥서면          | 옥봉리 | 298-2 | 298-2 | 도  | 43.0             | 43.0        | 군산시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br>번호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61       | 옥서면          | 옥봉리 | 287 | 287-1 | 전  | 748.0            | 131.0       | 군산시         |  |             |    |               |           |
| 62       | 옥서면          | 옥봉리 | 295 | 295-1 | 전  | 648.0            | 270.0       | 군산시         |  |             |    |               |           |
| 63-<br>1 | 옥서면          | 옥봉리 | 578 | 578-1 | 묘  | 3245.0           | 266.0       | 이*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br>원로6가길 67, *동 *호<br>(구로동, 구로우성아파<br>트) |             |    |               | 지분<br>1/3 |
| 63-<br>2 | 옥서면          | 옥봉리 | 578 | 578-1 | 묘  | 3245.0           | 266.0       | 이*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br>초중앙로*길 *, *동 *<br>호(반포동, 반포미도아        |             |    |               | 지분<br>1/3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일련<br>번호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              |     |       |       |    |                  |             |             | 파트)  |             |                               |               |                    |
| 63-<br>3 | 옥서면          | 옥봉리 | 578   | 578-1 | 묘  | 3245.0           | 266.0       | 군산시         |  |             |                               |               | 지분<br>1/3          |
| 64-<br>1 | 옥서면          | 옥봉리 | 582   | 582-1 | 전  | 346.0            | 150.0       | 이*구         | 옥구군 옥구면 상평리<br>*                           |             |                               |               | 지분<br>125/<br>500  |
| 64-<br>2 | 옥서면          | 옥봉리 | 582   | 582-1 | 전  | 346.0            | 150.0       | 이*섭         | 옥구군 옥구면 선연리<br>*                           |             |                               |               | 지분<br>125/<br>500  |
| 64-<br>3 | 옥서면          | 옥봉리 | 582   | 582-1 | 전  | 346.0            | 150.0       | 이*윤         |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br>로 20, *동 *호(나운동,<br>한올아파트) | 군산세무서       | 전북 군산시 미장<br>13길 49 군산세무<br>서 | 압류            | 지분<br>36/5<br>00   |
| 64-<br>4 | 옥서면          | 옥봉리 | 582   | 582-1 | 전  | 346.0            | 150.0       | 이*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br>곡로24나길 *(신림동)               |             |                               |               | 지분<br>11/5<br>00   |
| 64-<br>5 | 옥서면          | 옥봉리 | 582   | 582-1 | 전  | 346.0            | 150.0       | 군산시         |  |             |                               |               |                    |
| 65       | 옥서면          | 옥봉리 | 583-4 | 583-6 | 전  | 1180.0           | 139.0       | 군산시         |  |             |                               |               |                    |
| 66-<br>1 | 옥서면          | 옥봉리 | 583-1 | 583-5 | 전  | 3172.0           | 58.0        | 정*라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br>동 * 크린빌라 *호                 |             |                               |               | 지분<br>248/<br>1615 |
| 66-<br>2 | 옥서면          | 옥봉리 | 583-1 | 583-5 | 전  | 3172.0           | 58.0        | 정*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br>직동 * 삼익아파트 *동<br>*호         |             |                               |               | 지분<br>248/<br>1615 |
| 66-<br>3 | 옥서면          | 옥봉리 | 583-1 | 583-5 | 전  | 3172.0           | 58.0        | 군산시         |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연번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67 | 옥서면          | 옥봉리 | 584        | 584-1      | 전  | 306.0            | 58.0        | 군산시         |                         |             |                     |               |    |
| 68 | 옥서면          | 옥봉리 | 산101       | 미분할        | 임  | 2975.0           | 73.0        | 군산시         |                         |             |                     |               |    |
| 69 | 옥서면          | 옥봉리 | 570-1      | 570-1      | 잡  | 40.0             | 40.0        | 미등기12       |                         | 강*홍         | 성산1리                | 토지대장상<br>소유자  |    |
| 70 | 옥서면          | 옥봉리 | 596-3      | 596-4      | 도  | 182.0            | 93.0        | 이*례         | 옥구군 옥서면 옥봉리<br>*        |             |                     |               |    |
| 71 | 옥서면          | 옥봉리 | 597-3      | 597-5      | 도  | 93.0             | 34.0        | 미등기13       |                         | 석*문         | 성산1리                | 토지대장상<br>소유자  |    |
| 72 | 옥서면          | 옥봉리 | 597-4      | 597-6      | 도  | 53.0             | 31.0        | 송*래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br>*        |             |                     |               |    |
| 73 | 옥서면          | 옥봉리 | 599-2      | 599-3      | 도  | 26.0             | 17.0        | 군산시         |                         |             |                     |               |    |
| 74 | 옥서면          | 옥봉리 | 600-2      | 600-2      | 도  | 119.0            | 119.0       | 강*홍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br>*        |             |                     |               |    |
| 75 | 옥서면          | 옥봉리 | 600-4      | 600-7      | 도  | 83.0             | 25.0        | 강*홍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br>*        |             |                     |               |    |
| 76 | 옥서면          | 옥봉리 | 565-1<br>0 | 565-1<br>5 | 도  | 66.0             | 61.0        | 군산시         |                         |             |                     |               |    |
| 77 | 옥서면          | 옥봉리 | 565-3      | 565-1<br>2 | 답  | 106.0            | 3.0         | 지*영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br>면 신동*길 * | 군산산림조<br>합  | 전라북도 군산시<br>조촌로 101 | 근저당권,<br>지상권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지번(또는 연번)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78        | 옥서면          | 옥봉리 | 600-3 | 600-6 | 도  | 30.0             | 6.0         | 강*흥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br>*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지번(또는 연번)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br>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79        | 옥서면          | 옥봉리 | 618-2 | 618-5 | 도  | 53.0             | 42.0        | 군산시            |                  |             |    |               |    |
| 80        | 옥서면          | 옥봉리 | 617-4 | 617-9 | 도  | 265.0            | 28.0        | 국(농림축<br>산식품부) |                  |             |    |               |    |
| 81        | 옥서면          | 옥봉리 | 623-2 | 623-2 | 도  | 7.0              | 7.0         | 군산시            |                  |             |    |               |    |
| 82        | 옥서면          | 옥봉리 | 616-2 | 616-3 | 도  | 36.0             | 16.0        | 소*천            | 옥구군 옥구읍 옥봉리<br>* |             |    |               |    |
| 83        | 옥서면          | 옥봉리 | 625-3 | 625-3 | 도  | 43.0             | 43.0        | 군산시            |                  |             |    |               |    |
| 84        | 옥서면          | 옥봉리 | 615-2 | 615-3 | 도  | 118.0            | 7.0         | 김*룡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br>* |             |    |               |    |
| 85        | 옥서면          | 옥봉리 | 615-2 | 615-4 | 도  | 118.0            | 14.0        | 김*룡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br>* |             |    |               |    |
| 86        | 옥서면          | 옥봉리 | 1654- | 미분할   | 도  | 4735.0           | 1891.0      | 국(국토교)         |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제련면적 | 소재지<br>(군산시) |     | 지 번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    |               | 비고 |
|------|--------------|-----|--------|-----|----|--------------|-------------|-------------|----|-------------|----|---------------|----|
|      |              |     | 당초     | 편입  |    | 공부상지적<br>(㎡) | 편입지적<br>(㎡)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성명 또는<br>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br>및내용 |    |
|      |              |     | 1      |     |    |              |             | 통부)         |    |             |    |               |    |
| 87   | 옥서면          | 옥봉리 | 612-2  | 미분할 | 도  | 38.0         | 17.0        | 군산시         |    |             |    |               |    |
| 88   | 옥서면          | 옥봉리 | 1654-8 | 미분할 | 도  | 157.0        | 19.0        | 국(국토교통부)    |    |             |    |               |    |
| 89   | 옥서면          | 옥봉리 | 612-5  | 미분할 | 도  | 174.0        | 14.0        | 군산시         |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장물)

| 제련면적 | 소재지 |     |     | 지 번 |   |   | 지목 | 지장물<br>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br>(면적) | 단위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
| 1    | 군산시 | 옥서면 | 옥봉리 | 576 | - | 4 | 전  | 소나무       | R30*H3.0  | 1          | 주  | 추*택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39, *동 *호(나운동,유원아파트) |     |    |        |    |
|      |     |     |     |     |   |   |    | 회양목       | W0.5*H0.5 | 1          | 주  |     |                                       |     |    |        |    |
|      |     |     |     |     |   |   |    | 무궁화나무     | R40*H1.4  | 3          | 주  |     |                                       |     |    |        |    |
|      |     |     |     |     |   |   |    | 배롱나무      | R30*H1.5  | 1          | 주  |     |                                       |     |    |        |    |
|      |     |     |     |     |   |   |    | 배나무       | R12*H1.8  | 1          | 주  |     |                                       |     |    |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장물)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장물) |     |     |     |     |   |   |   |                  |           |   |   |     |                  |
|--------------------------|-----|-----|-----|-----|---|---|---|------------------|-----------|---|---|-----|------------------|
|                          |     |     |     |     |   |   |   | 호랑가<br>시나무       | R20*H1.3  | 1 | 주 |     |                  |
|                          |     |     |     |     |   |   |   | 동백나<br>무         | R13*H1.5  | 1 | 주 |     |                  |
|                          |     |     |     |     |   |   |   | 가이즈<br>까 향<br>나무 | R10*H1.0  | 4 | 주 |     |                  |
|                          |     |     |     |     |   |   |   | 단풍나<br>무         | R14*H2.0  | 1 | 주 |     |                  |
|                          |     |     |     |     |   |   |   | 사철나<br>무         | W1.3*H0.8 | 2 | 주 |     |                  |
| 2                        | 군산시 | 옥서면 | 옥봉리 | 575 | - | 9 | 전 | 매실나<br>무         | R25*H2.5  | 1 | 주 | 김*술 |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br>* |

군산시 공고 제2025-2618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및 폐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25. 12. 04.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25. 12. 04.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4점)

| 구분               | 공인명                         | 글씨·규격            | 인 영 | 새긴날      | 재료  | 등록사유           | 관리부서 |
|------------------|-----------------------------|------------------|-----|----------|-----|----------------|------|
| 공<br>인<br>신<br>조 | 군산시대야면장인<br>민원사무전용<br>(종직인) | 한글전서체<br>2.1*2.1 |     | 2025.11. | NBR | 자동인증기<br>교체    | 대야면  |
|                  | 군산시대야면장인<br>민원사무전용<br>(횡직인) | 한글전서체<br>2.1*2.1 |     | 2025.11. | NBR |                |      |
| 공<br>인<br>신      | 군산시조촌동장인<br>민원사무전용<br>(종직인) | 한글전서체<br>2.1*2.1 |     | 2025.11. | NBR | 통합민원발급<br>기 구입 | 조촌동  |

|   |                             |                  |   |          |     |  |
|---|-----------------------------|------------------|---|----------|-----|--|
| 조 |                             |                  |   |          |     |  |
|   | 군산시조촌동장인<br>민원사무전용<br>(횡직인) | 한글전서체<br>2.1*2.1 |  | 2025.11. | NBR |  |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2점)

| 구분               | 공인명                         | 글씨·규격            | 인 영   | 새긴날      | 재료  | 등록사유        | 관리부서 |
|------------------|-----------------------------|------------------|---|----------|-----|-------------|------|
| 공<br>인<br>폐<br>기 | 군산시대야면장<br>민원사무전용<br>(종직인)  | 한글전서체<br>2.1*2.1 |   | 2016.11. | NBR | 자동인증기<br>교체 | 대야면  |
|                  | 군산시대야면장인<br>민원사무전용<br>(횡직인) | 한글전서체<br>2.1*2.1 |  | 2016.11. |     |             |      |

군산시 공고 제2025-2675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군 산 시 장

-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25. 12. 08.
-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25. 12. 08.
- 3. 신규 등록 공인 및 인영(6점)

| 구분               | 공인명                          | 글씨·규격            | 인 영   | 새긴날      | 재료 | 등록사유                             | 관리부서       |
|------------------|------------------------------|------------------|---|----------|----|----------------------------------|------------|
| 공<br>인<br>신<br>조 | 군산시보건소<br>감염병관리과<br>일상경비출납원인 | 한글전서체<br>2.0*2.0 |  | 2025.12. | 후각 | 보건소<br>예산분리에<br>따른<br>일상경비<br>운영 | 감염병<br>관리과 |
|                  | 군산시보건소<br>감염병관리과<br>분입재무관인   | 한글전서체<br>2.0*2.0 |  | 2025.12. | 후각 |                                  |            |
|                  | 군산시보건소<br>감염병관리과<br>분입징수관인   | 한글전서체<br>2.0*2.0 |  | 2025.12. | 후각 |                                  |            |

|                  |                             |                  |   |          |    |                                  |       |
|------------------|-----------------------------|------------------|---|----------|----|----------------------------------|-------|
| 공<br>인<br>신<br>조 | 군산시보건소<br>건강관리과<br>일상경비출납원인 | 한글전서체<br>2.0*2.0 |  | 2025.12. | 후각 | 보건소<br>예산분리에<br>따른<br>일상경비<br>운영 | 건강관리과 |
|                  | 군산시보건소<br>건강관리과<br>분입재무관인   | 한글전서체<br>2.0*2.0 |  | 2025.12. | 후각 |                                  |       |
|                  | 군산시보건소<br>감염병관리과<br>분입징수관인  | 한글전서체<br>2.0*2.0 |  | 2025.12. | 후각 |                                  |       |

군산시 공고 제2025 - 2720호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보상계획공고

국가지정유산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유산(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본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정비사업
- 나.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토지 73필지 157,162.2㎡
- 라. 사업내용 : 국가유산(보호)구역 편입토지등 보상
- 마.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
- 바.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2.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5. 12. 15. ~ 12. 29.(14일간)
- 나.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등 조서는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 우리시 문화예술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다. 열람내용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 라. 이의신청 : 군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시설계(☎063-454-3312)

마. 이의신청방법 : 열람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

**3.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나. 보상액 산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

**다.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청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시청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함

라.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 통지

마. 보상방법 :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청구에 의한 계좌지급

**4.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군산시 문화예술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063-454-3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토지 등 누락 규격,수량 주소변경 가격관련 기타

# 이 의 신 청 서

|           |        |                      |
|-----------|--------|----------------------|
| 1. 제 목    |        | 군산 선유동 망주봉 일원 토지등 매입 |
| 2. 사업의 종류 |        | 토지등 보상               |
| 3.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 4. 의 견    |        |                      |
| 5. 기 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5. 12.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군산시장 귀하

|     |  |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br>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 토지등조사

| 연<br>번 | 소재지              | 지번        | 지<br>목 | 지적<br>면적<br>(㎡) | 편입면적(㎡)     |              |              | 토지소유자 |                               | 토지 지분           |         | 관계인 |    | 비고 |
|--------|------------------|-----------|--------|-----------------|-------------|--------------|--------------|-------|-------------------------------|-----------------|---------|-----|----|----|
|        |                  |           |        |                 | 계           | 국가유산<br>지정구역 | 국가유산<br>보호구역 | 성명    | 주소                            | 지분              | 면적      | 성명  | 주소 |    |
| 1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산<br>23-1 | 임      | 108,9<br>34     | 108,<br>934 | 108,934      | -            | 임**   | 군산시 월명로 ***                   | 9085/1386000    | 714     |     |    |    |
|        |                  |           |        |                 |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1376915/1386000 | 108,220 |     |    |    |
| 2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산22       | 임      | 1,785           | 1,785       | 1,785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br>청) |                 | 1,785   |     |    |    |
| 3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산24       | 임      | 1,488           | 1,488       | 1,488        | -            | 송**   | 주소불명                          | 20790/228690    | 135.3   |     |    |    |
|        |                  |           |        |                 |             |              |              | 김**   | 주소불명                          | 20790/228690    | 135.3   |     |    |    |
|        |                  |           |        |                 |             |              |              | 임**   | 주소불명                          | 20790/228690    | 135.3   |     |    |    |
|        |                  |           |        |                 |             |              |              | 김**   | 주소불명                          | 20790/228690    | 135.3   |     |    |    |
|        |                  |           |        |                 |             |              |              | 임**   | 주소불명                          | 20790/228690    | 135.3   |     |    |    |
|        |                  |           |        |                 |             |              |              | 김**   | 경기도 의정부시<br>의정부동 ***-*        | 484/228690      | 3.1     |     |    |    |
|        |                  |           |        |                 |             |              |              | 이**   | 주소불명                          | 20790/228690    | 135.3   |     |    |    |
|        |                  |           |        |                 |             |              |              | 이**   | 인천광역시 계양구<br>작전시장로8번길<br>***- | 187110/20810790 | 13.4    |     |    |    |
|        |                  |           |        |                 |             |              |              | 이**   | 서울특별시 서초구                     | 332640/2081079  | 2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평대로 ***-*                   | 0              |         |      |      |          |
|   |                  |      |   |             |             |     |         |     | 이** 서천군 서천읍 군<br>사리 ***      | 6300/2286900   | 4.1     |      |      |          |
|   |                  |      |   |             |             |     |         |     | 이** 군산시 상나운1길<br>*-*         | 4200/2286900   | 2.7     |      |      |          |
|   |                  |      |   |             |             |     |         |     |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br>경인로524번길 ** | 4200/2286900   | 2.7     |      |      |          |
|   |                  |      |   |             |             |     |         |     | 이** 군산시 나운3길 *               | 4200/2286900   | 2.7     |      |      |          |
|   |                  |      |   |             |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623119/1486485 | 623.8   |      |      |          |
| 4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산25  | 임 | 496         | 496         | 496 | -       |     | 박** 군산시 상나운1길<br>**          | 1/9            | 55.1    |      |      |          |
|   |                  |      |   |             |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8/9            | 440.9   |      |      |          |
| 5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45   | 전 | 884.2       | 884.<br>2   | -   | 884.2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884.2   |      |      |          |
| 6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45-1 | 전 | 170.8       | 170.<br>8   | -   | 170.8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70.8   |      |      |          |
| 7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46   | 전 | 1,574<br>.4 | 1,57<br>4.4 | -   | 1,574.4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574.4 |      |      |          |
| 8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46-1 | 전 | 204.6       | 204.<br>6   | -   | 204.6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204.6   |      |      |          |
| 9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51   | 전 | 331         | 331         | 331 | -       | 미등기 |                              |                | 331     | 선유도리 | 주소불명 | 토지<br>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br>자             |
| 10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52   | 전 | 172   | 172   | 172   | -     | 미등기 |                           |  | 172   | 선유도리 | 주소불명 | 토지<br>대장<br>소유<br>자 |
| 11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53   | 전 | 1,494 | 1,494 | 1,494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494 |      |      |                     |
| 12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54   | 전 | 764   | 764   | 764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764   |      |      |                     |
| 13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55   | 전 | 1,266 | 1,266 | 1,266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266 |      |      |                     |
| 14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56   | 전 | 515.1 | 515.1 | -     | 515.1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515.1 |      |      |                     |
| 15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57   | 전 | 687.5 | 687.5 | -     | 687.5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687.5 |      |      |                     |
| 16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58   | 전 | 570.3 | 570.3 | -     | 570.3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570.3 |      |      |                     |
| 17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59   | 전 | 575   | 575   | -     | 575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575   |      |      |                     |
| 18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60   | 전 | 258   | 258   | -     | 258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258   |      |      |                     |
| 19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60-1 | 전 | 628   | 628   | -     | 628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628   |      |      |                     |
| 20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61   | 전 | 774   | 774   | -     | 774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774   |      |      |                     |

|    |                  |      |   |             |             |   |         |     |                           |         |  |  |  |  |
|----|------------------|------|---|-------------|-------------|---|---------|-----|---------------------------|---------|--|--|--|--|
| 21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62   | 전 | 1,589<br>.2 | 1,58<br>9.2 | - | 1,589.2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1,589.2 |  |  |  |  |
| 22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63   | 전 | 605         | 605         | - | 605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605     |  |  |  |  |
| 23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64   | 전 | 1,124<br>.5 | 1,12<br>4.5 | - | 1,124.5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1,124.5 |  |  |  |  |
| 24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64-2 | 전 | 375.5       | 375.<br>5   | - | 375.5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375.5   |  |  |  |  |
| 25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64-3 | 전 | 216.9       | 216.<br>9   | - | 216.9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216.9   |  |  |  |  |
| 26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72   | 전 | 45.2        | 45.2        | - | 45.2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45.2    |  |  |  |  |
| 27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72-4 | 전 | 42.8        | 42.8        | - | 42.8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42.8    |  |  |  |  |
| 28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72-1 | 전 | 325.3       | 325.<br>3   | - | 325.3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325.3   |  |  |  |  |
| 29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72-5 | 전 | 5.7         | 5.7         | - | 5.7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5.7     |  |  |  |  |
| 30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72-2 | 전 | 21          | 21          | - | 21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21      |  |  |  |  |
| 31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73   | 전 | 1,037<br>.4 | 1,03<br>7.4 | - | 1,037.4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1,037.4 |  |  |  |  |

|    |              |      |   |       |       |       |       |     |                           |       |       |     |      |                     |
|----|--------------|------|---|-------|-------|-------|-------|-----|---------------------------|-------|-------|-----|------|---------------------|
| 32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76   | 전 | 411.9 | 411.9 | -     | 411.9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411.9 |     |      |                     |
| 33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77   | 전 | 484.5 | 484.5 | -     | 484.5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484.5 |     |      |                     |
| 34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78   | 전 | 595.7 | 595.7 | -     | 595.7 | 채** | 서울특별시 송파구<br>올림픽로 **      | 1/44  | 13.5  |     |      |                     |
|    |              |      |   |       |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43/44 | 582.2 |     |      |                     |
| 35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79   | 전 | 569   | 569   | -     | 569   | 미등기 |                           |       | 569   | 조** | 주소불명 | 토지<br>대장<br>소유<br>자 |
| 36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80   | 전 | 3,663 | 3,663 | 3,663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3,663 |     |      |                     |
| 37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80-1 | 전 | 236   | 236   | 236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236   |     |      |                     |
| 38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82   | 전 | 331   | 331   | 331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331   |     |      |                     |
| 39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83   | 전 | 823   | 823   | 823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823   |     |      |                     |
| 40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84   | 전 | 2,291 | 2,291 | -     | 2,291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2,291 |     |      |                     |
| 41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84-5 | 전 | 49    | 49    | -     | 49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49    |     |      |                     |
| 42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84-4 | 전 | 33    | 33    | -     | 33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33    |     |      |                     |
| 43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85   | 전 | 519   | 519   | -     | 519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                |       | 519   |     |      |                     |

|    |                  |      |   |       |       |       |       |     |                           |  |       |  |  |  |
|----|------------------|------|---|-------|-------|-------|-------|-----|---------------------------|--|-------|--|--|--|
|    | 면 선유도리           |      |   |       |       |       |       |     | (조촌동, 군산시청)               |  |       |  |  |  |
| 44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86   | 전 | 785   | 785   | -     | 785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785   |  |  |  |
| 45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86-2 | 전 | 298   | 298   | -     | 298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298   |  |  |  |
| 46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88   | 전 | 501   | 501   | -     | 501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501   |  |  |  |
| 47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88-1 | 전 | 163   | 163   | -     | 163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63   |  |  |  |
| 48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89   | 전 | 489.7 | 489.7 | -     | 489.7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489.7 |  |  |  |
| 49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89-1 | 전 | 114   | 114   | -     | 114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14   |  |  |  |
| 50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116  | 전 | 211   | 211   | 211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211   |  |  |  |
| 51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117  | 전 | 704   | 704   | 704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704   |  |  |  |
| 52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118  | 전 | 387   | 387   | 387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387   |  |  |  |
| 53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119  | 전 | 301   | 301   | 301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301   |  |  |  |
| 54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120  | 전 | 375   | 375   | -     | 375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375   |  |  |  |
| 55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121  | 전 | 795   | 795   | -     | 795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795   |  |  |  |
| 56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122  | 대 | 208   | 208   | -     | 208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208   |  |  |  |
| 57 | 군산시 옥도<br>면 선유도리 | 123  | 전 | 1,425 | 1,425 | 1,425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425 |  |  |  |

|    |              |     |   |       |       |       |     |     |                           |         |       |      |      |                     |
|----|--------------|-----|---|-------|-------|-------|-----|-----|---------------------------|---------|-------|------|------|---------------------|
| 58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24 | 전 | 390   | 390   | 390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390   |      |      |                     |
| 59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25 | 전 | 152   | 152   | 152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52   |      |      |                     |
| 60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26 | 전 | 417   | 417   | -     | 417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417   |      |      |                     |
| 61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27 | 전 | 185   | 185   | 185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85   |      |      |                     |
| 62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28 | 전 | 1,488 | 1,488 | 1,488 | -   | 박** | 전주시 완산구 서신<br>동 ****-     |         | 1,488 |      |      |                     |
| 63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29 | 대 | 255   | 255   | 255   | -   | 미등기 |                           |         | 255   | 선유도리 | 주소불명 | 토지<br>대장<br>소유<br>자 |
| 64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30 | 전 | 486   | 486   | 486   | -   | 채** | 서울특별시 송파구<br>올림픽로 **      | 1/44    | 11    |      |      |                     |
|    |              |     |   |       |       |       |     | 박** | 군산시 부곡1길 **               | 1/880   | 0.6   |      |      |                     |
|    |              |     |   |       |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859/880 | 474.4 |      |      |                     |
| 65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31 | 전 | 106   | 106   | 106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06   |      |      |                     |
| 66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32 | 전 | 830   | 830   | 830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830   |      |      |                     |
| 67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33 | 전 | 436   | 436   | 436   | -   | 박** | 전주시 완산구 서신<br>동 ****-     |         | 436   |      |      |                     |
| 68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34 | 전 | 833   | 833   | 833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833   |      |      |                     |

|    |              |          |   |       |               |           |          |     |                           |           |       |  |  |  |
|----|--------------|----------|---|-------|---------------|-----------|----------|-----|---------------------------|-----------|-------|--|--|--|
| 69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35      | 전 | 1,217 | 1,217<br>7    | 1,217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217 |  |  |  |
| 70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36      | 전 | 813   | 813           | 813       | -        | 이** | 전주시 완산구 평화<br>동2가 ***-*   | 290/813   | 290   |  |  |  |
|    |              |          |   |       |               |           |          | 권** | 전주시 완산구 세내<br>로 ***       | 407/813   | 407   |  |  |  |
|    |              |          |   |       |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116/813   | 116   |  |  |  |
| 71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37      | 전 | 1,061 | 1,061<br>1    | 1,061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1,061 |  |  |  |
| 72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38      | 전 | 2,261 | 2,261<br>1    | 2,261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1448/4522 | 724   |  |  |  |
|    |              |          |   |       |               |           |          | 권** | 경기도 성남시 분당<br>구 돌마로 ***   | 1585/4522 | 792.5 |  |  |  |
|    |              |          |   |       |               |           |          | 최** | 전주시 덕진구 가리<br>내로 ***      | 1489/4522 | 744.5 |  |  |  |
| 73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142      | 전 | 509   | 509           | 509       | -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br>(조촌동, 군산시청) |           | 509   |  |  |  |
|    |              | 73필<br>지 |   |       | 157,1<br>62.2 | 138,638.3 | 18,523.9 |     |                           |           |       |  |  |  |